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2004. 12

정재호 · 류덕현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우리 경제가 급속히 개방되고 산업별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여년간 증가하는 반면 농림어업과 광업은 각각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수출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90년 초반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던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전기 및 전기기기 산업 그리고 수송 장비산업은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바꿈을 하였다.

한편,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폭넓은 시장개방은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에 큰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 개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관세율 변화라는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는 산업구조와 실효관세율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이용하여 시계열 자료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관세율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율과 무역특화지수 및 수입의존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세율 정책이 분명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정책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실효관세율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간재에 대한 차별적인 관세율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정재호 박사와 류덕현 박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김진 박사, 인천대학교 이명현 교수,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임성환 사무관, 그리고 익명의 두 심사논평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저자들의 자료수집과 분석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용대 주임연구원과 신지은 연구원,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에 많은 노고를 한 장정순 연구조원과 안상숙 연구조원, 그리고 원고교정을 맡아 준 홍보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고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관세율 변화라는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였다. 우선, 산업구조와 실효관세율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이용하여 시계열 자료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관세율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율과 산업구조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세율 정책이 분명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실증분석 결과 실효관세율은 무역특화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명목관세율은 수입의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도 정책적으로 관세율 구조를 조정할 때 실효관세율 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향후에도 관세율 구조를 개편할 때 실효관세율 구조를 살펴볼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효관세율 수준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곧 정책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실효관세율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최종재에 대한 관세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는 WTO 체제에서 특히 ITA 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추진된 최종재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중간재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중간재의 관세율을 낮출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재에 대한 선별 작업을 통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장 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에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중심관세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

장잡재력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되는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관세 보호는 자원 재배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정책시사점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향후 관세율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며, 본고의 분석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입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중간재 선별 연구는 향후 개별 산업별 세부 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분야로 본고의 연구영역을 넘는 부분이다. 특히,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핵심 부품 및 소재 산업 연구와 함께 업체별 실태 조사도 함께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를 HSK와 연계시키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학·연 협동을 통한 방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별적인 중간재 관세율 조정을 통해 역관세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한 산업의 역관세 조정은 새로운 부문에 대해 역관세를 발생시킬 수 있고, 역관세 해소를 위해 중간재 부문에 대해 관세율을 낮출 경우 해당 중간재 산업의 보호수준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제품 산업과 중간재 산업 중 어느 산업을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 정책적 판단과 중간재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세율 불균형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해야 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주요 산업에 대한 역관세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경우 콩류, 유지작물 등의 관세율을 낮출 경우 역관세 현상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콩류와 유지작물 중 대두, 녹두, 참깨 등은 시장접근물량 관리 품목으로 매우 높

은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역관세를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산물 고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사례가 된다.

또한 나프타 역관세 해소를 위해서는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필요한데, 원유의 관세율 수준은 나프타에서 나타나는 역관세 해소보다는 더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등 제조업에서는 개별 산업간의 연관 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산업의 역관세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중간재 산업의 관세율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중간재에 대해 보호를 할 것이고 어느 중간재를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특히 컴퓨터와 주변기기 산업처럼 해당 산업의 중간재가 여러 산업에 걸쳐 폭 넓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종재보다는 보다 많은 중간재 산업의 보호가 더 나은 정책대안으로 여겨진다. 다만, 집적회로 산업처럼 컴퓨터와 주변기기 산업도 무역특화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적극 활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최종재 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선박의 역관세 문제는 역관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선박제조시설은 보세구역이고 대부분의 선박이 수출됨으로써 관세유예와 사후 환급에 의해 사실상 완성품 업체에겐 관세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에서 우월한 특정 국내부품을 제외하고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중간재의 관세율을 낮추어 보호수준을 낮추는 것은 선박의 역관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해당 중간재 산업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역관세 해소 혹은 실효관세율 개선을 위해 개별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중간재에 적절한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중심관세율 체계와 상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경제가 복잡해질수록 정책당국에서 개별 산업별, 더 나아가 개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개별적인 최적의 관세율을 찾아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산업간 연관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최적 관세율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중심관세율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중간재 관세율에 주목하려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와 최종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효관세율 개선과 역관세 해소 등 관세율 정책이 추구하는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세율 정책의 시행 시기는 DDA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그 이후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지금 역관세 시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체계를 조정할 경우 향후 DDA 협상결과에 의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다시 한번 개편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 없이 산업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저해하여 또 다른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협상 이후 전체적인 기본관세율 체계의 개편을 시도할 때 역관세 품목들 등 실효관세율 수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하며, 다만, 현재 산업별로 역관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등의 탄력관세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탄력관세 제도의 취지가 바로 전체적인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에 앞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추가적으로 산업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취약산업의 보호보다는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에 더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80년

대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향해 관세율 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이런 관세율 정책은 두 차례에 걸친 관세인하에시제를 통해 산업 중심적에서 산업 중립적인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섬유산업 등에 대한 관세율을 중심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 관세율 인하 및 무세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섬유 및 가죽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업종의 하락과 전기 및 전자기기 등 조립가공업종의 상승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비재업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조립가공업종은 상승하였다. 한편, 수출에서도 조립가공제품의 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재제품의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 크게 감소하여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관세율 정책과 연관시켜 분석하면, 1997년에 추진한 섬유산업 등에 대한 관세율 인상정책은 이들 산업을 수입 측면에서는 보호하였을지 모르지만,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기보다는 이들 산업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평가된다.

취약산업에 대한 관세율 정책상의 지원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관세율 정책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일명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으로 정해진 관세율 수준에서 어느 한 산업을 지원함(관세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자원을 특정 산업에 묶어 두거나 혹은 해당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는 자원이 덜 배분되게 된다. 따라서 취약산업을 보호하여 이들 산업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도록 관세율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지원할지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사양산업보호는 급격한 자유화의 폐해를 줄이고 정치적인 지지를 쉽게 얻기 때문에 편리한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한정된

자원과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에서는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사양산업에 대한 탄력관세, 반덤핑관세 혹은 관세환급 등의 정책수단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것은 아니며 이런 정책수단은 필수적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고부가가치 핵심 중간재 산업에 대한 선별적 육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본고는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 특히, 기본관세율 정책이 지향할 바에 대한 논의이다. 그러나 현재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정책적 판단과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개별 국가별로 FTA가 체결되고, FTA는 특성상 모든 품목을 일시에 무세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철폐 예외품목, 관세유예기간 설정 품목, 그리고 즉시 관세철폐 품목 등으로 나누어 철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해당 국가별로 차등관세를 적용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런 품목을 선별하여 관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당 국가별로 품목별 산업별 차등관세를 어떻게 적용할지 즉,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예외를 적용하고 관세유예기간 설정 품목으로 정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특히, 중간재 산업이 발달한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염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개별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FTA 뿐만 아니라 FTA 대상국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 장기적으로 어떤 품목과 산업에 대해 관세 보호가 필요한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런 연구 결과가 향후 기본관세율 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7
II.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 현황 및 특징	23
1.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변화	23
가. 1984년 이전	23
나. 1984년 이후	25
2.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 및 분포 변화	29
III.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35
1. 산출액, 부가가치 및 수출입 변화	36
가. 산출액 변화	36
나. 부가가치 창출액 변화	39
다. 수출입 변화	44
2. 수입의존도 변화 추이	52
가. 수입의존도 개념	53
나. 2000년 산업별 수입의존도	54
다. 수입의존도의 변화	57
3. 무역특화지수 변화	66
가. 무역특화지수의 개념	66
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67
다. 세부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특징	72
4. 정책적 시사점	76

IV. 실효관세율 변화 추이	81
1. 실효관세율 개념	81
가. 실효관세율 개념	82
나. 실효관세율 추정의 문제점	87
2. 실효관세율 변화 추이	89
가. 1990년 이전의 산업별 변화	89
나. 1990년 이후의 산업별 변화	92
3. 역관세 문제	114
가. 역관세 품목들	116
나. 역관세 해소 필요성 및 조정	119
다. 정책적 시사점	131
4. 관세율과 산업구조	133
가. 분석모형 설정	134
나. 관세율과 무역특화지수	136
다. 관세율과 수입의존도 관계	140
라. 정책적 시사점	142
 V. 결 론	 145
 참고문헌	 152

표 목 차

<표 II- 1> 제2차 관세율구조 개편원칙	2
<표 II- 2>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	9
<표 II- 3> 단순평균관세율 변화 추이	9
<표 II- 4>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	3
<표 III- 1> 총산출액 구성 추이	6
<표 III- 2> 산업별 산출액 구성비 추이	8
<표 III- 3> 부가가치 증가율	9
<표 III- 4>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4
<표 III- 5> 부가가치율	4
<표 III- 6> 수출상품별 구성비 추이	4
<표 III- 7> 수출 비중	4
<표 III- 8> 상품별 수출률 추이	4
<표 III- 9> 수입상품별 구성비 추이	6
<표 III-10> 수입 비중 변화 추이	3
<표 III-11> 교역재산업의 총수요와 용도별 수입의존도(2000년) ...	5
<표 III-12> 교역재산업 총수요 수입의존도 추이(1980~2000년) ...	9
<표 III-13> 교역재산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 추이(1980~2000년) ..	6
<표 III-14> 교역재산업의 소비재 수입의존도 추이(1980~2000년) ..	6
<표 III-15> 교역재산업의 투자재 수입의존도 추이(1980~2000년) ..	6
<표 III-16> 무역특화지수	7
<표 III-17> 무역특화지수(+)	73
<표 III-18> 무역특화지수(-)	4
<표 III-19> 무역특화지수 변화	5

<표 IV- 1> 주요산업별 실효보호율	9
<표 IV- 2> 1990년 이전의 명목보호율 및 실효보호율 대비표	9
<표 IV- 3> 산업별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단순평균 기준)	110
<표 IV- 4> 산업별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가중평균 기준)	112
<표 IV- 5> 역관세 부문들(실효관세율 기준)	118
<표 IV- 6> 무역특화지수와 실효관세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119
<표 IV- 7> 수입의존도와 명목관세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122

그림목차

[그림 II- 1] 실행관세율(1998, 2002~04년)	33
[그림 II- 2] 실적관세율(1990~2000년)	34
[그림 II- 3] 실적관세율(2001~03년)	34
[그림 III- 1] 부가가치 비중 변화	41
[그림 III- 2]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68
[그림 III- 3] 소비자재 업종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69
[그림 III- 4] 기초소재 업종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70
[그림 III- 5] 조립가공 업종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71
[그림 IV- 1] 단순평균(1990년)	95
[그림 IV- 2] 단순평균(1995년)	96
[그림 IV- 3] 단순평균(2000년)	96
[그림 IV- 4] 단순평균(2003년)	97
[그림 IV- 5] 가중평균(1990년)	99
[그림 IV- 6] 가중평균(1995년)	100
[그림 IV- 7] 가중평균(2000년)	100
[그림 IV- 8] 가중평균(2003년)	101

[그림 IV- 9]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실효관세율 추이	124
[그림 IV-10] 나프타의 실효관세율 추이	125
[그림 IV-11] 집적회로(IC)의 실효관세율 추이	126
[그림 IV-12] 개별소자의 실효관세율 추이	128
[그림 IV-13]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실효관세율 추이	129
[그림 IV-14] 무역특화지수(종축)와 실효관세율(횡축)	138
[그림 IV-15] 수입의존도(종축)와 명목관세율(횡축)	141

I. 서론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관세제도가 실시된 것은 1883년 한일통상협정 체결 이후이다. 그러나 한일합병 이후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관세제도를 수립한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로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의 일이다. 그 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은 1950~60년대에는 재정수입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에 맞추어 산업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1984년을 기점으로 중심관세율체계¹⁾로 전환하면서 산업중립적인 관세율 정책을 추진하였고 현재와 같은 관세율 체계의 기본구조가 확립되었다.

한편, 그 동안 국내외적 경제환경은 상당히 변화하였다. 우리 경제가 급속히 개방되고 산업별 기술발전도 상당한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나 수출입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 예로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총산출액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90년 약 30%에서 2000년에는 약 40%에 육박한 반면 농림어업과 광업은 1980년대 각각 8%와 0.8%에서 2000년에는 2.7%와 0.2%로 크게 감소하였다. 수출 측

1) 관세율 체계를 구분할 때 균등관세율 체계와 차등관세율 체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차등관세율 체계는 단어 의미 그대로 품목별로 모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의미하며, 반면 균등관세율 체계는 품목별로 균등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중심관세율 체계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중심관세율 체계는 균등관세율 체계와 차등관세율 사이의 개념으로 전체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일정한 중심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균등관세율 체계에 더 가까운 개념이지만 모든 품목에 균등한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가 대표적인 예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중심세율 8%를 적용하고 있다.

면에서도 1980년 31.6%로 수출상품 비중이 가장 높았던 섬유 및 가죽 제품은 2000년 그 비중이 9.7%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전기 및 전기기기, 수송장비는 1980년 각각 7.9%와 4.9%에서 2000년 30.5%와 13.0%로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바꿈을 하였다.

본고는 이런 경제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한 관세정책이 자원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관세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본고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실효관세율 변화에 대한 일관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역관세문제, 관세율과 산업구조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시기적으로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종결되어 우리나라 관세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새로운 중심세율의 설정 등 기본관세율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의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관세율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기본관세율 개편에 기초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의 기초 자료로서, 그리고 개별 국가별 양허세율일정(Country Schedule)을 작성할 때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980년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한다. 이런 시계열화 작업은 지난 20여년 동안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시계열화 작업 그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는 총산출, 부가가치, 수출입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관세율 정책은

경제내 자원배분을 변화시킴으로써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의 일부분은 관세율 정책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고는 관세율 정책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기 때문에 경쟁력 지수로 해석될 수 있는 무역특화지수와 수입의존도지수도 지난 20여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수입의존도는 수입에 의해 충족되는 국내수요의 비율로서 수입에 대한 국내산업의 경쟁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입 통계를 이용한 무역성과 지표 중 하나로 전체 수출입 합계에서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경쟁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뚜렷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수치 하나하나의 절대값에 중요성을 두기보다는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된 이들 지수의 지난 20여년간의 변화를 시계열화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런 분석을 통해 산업별 자원배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분석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과 관련되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실효관세율(effective rate of tariff protection)²⁾ 변화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다. 실효관세율의 목적은 전체적인 관세율체제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데 있다. 즉, 명목관세율 인상은 상대가격과 수입의 변화를 초래하지만, 원료를 포함한 수입중간재에 대하여 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이로 인한 생산비용의 인상효과로 완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효과는 약화된다. 따라서 실질적 보호의 정도와 자원이

2) 실효보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은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물품세의 효과를 고려하여 부가가치 보호효과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실효관세율(effective rate of tariff protec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관세율만을 고려한 보호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장근호·박상태(2002) 참고.

등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중간재로 투입되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같이 감안한 실효관세율의 추정이 필요하다.

1990년 이전의 실효보호율을 분석한 연구는 현재보다 풍부하였다. 김광석·웨스트팔(1976)이 1960년대 말의 실효보호율을 추정하였고, 남중현(1981), 한국개발연구원(1982), 김광석·홍성덕(1982)은 1970년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홍성덕(1992), 최낙균 외(1993) 등은 1980년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실효관세율 추정에 대한 연구는 장근호(1997), 장근호·이명현(1999) 등만이 있고, 시계열화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실효관세율 분석이 없었다. 특정 연도에 한정해 실효관세율을 분석한 연구도 의의가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산업별로 실효관세율이 어떤 추세로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분석하지 않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실효관세율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되기 때문에 지난 10여년간의 실효관세율 변화를 통해 관세정책이 경제의 자원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2003년 12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의 실효관세율 변화를 추정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의 우리나라 실효관세율 체계 속에서 음(-)의 실효관세율이 지속되는 역관세³⁾ 현상이 나타나는 산업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분석도 시도한다. 이러한 일련의

3) 역관세 개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최종재와 동 최종재의 원료인 원자재 및 중간재 등의 관세율 사이에 경사관세구조가 아닌 반대의 역의 관계(역차등관세: reverse tariff escalation)가 존재할 때 이를 역관세가 존재한다고 명명한다. 다른 하나는 실효관세율이 음(-)의 보호수준을 나타낼 때를 의미한다. 결국 전자는 후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역차등관세가 나타날 경우 명목관세율보다 실효관세율이 낮아질 것이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실효관세율이 결국 음(-)의 보호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분석대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실효관세율이 음(-)의 보호수준을 나타내는 협의의 개념에 기준하여 역관세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들은 향후 관세율 정책과 관련되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시계열화된 실효관세율 자료를 이용하여 관세율 정책이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관세율 정책에 초점을 두어 관세율 정책과 가장 밀접적으로 반응하고 경쟁력 지수로 해석될 수 있는 무역특화지수와 수입의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⁴⁾. 이런 실증분석을 통해 결국 우리나라가 그동안 실행한 관세율 정책이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지수와 관세율 정책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정부가 향후 관세율 정책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하거나 혹은 관세율 구조를 개편할 때 이런 분석결과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분석결과 실효관세율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나타날 경우 명목관세율은 물론이고 실효관세율 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대안이 되며, 향후 관세율 구조를 논의할 때도 실효관세율 분석이 기초 자료로 활용될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 동안 기존 연구에서도 실효관세율, 무역특화지수 및 수입의존도 등을 추정하고 산출하는 연구는 있었지만 이들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를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된 시계열 자료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분석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도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자료가 축적되면 더 기간을 늘려 보다 풍성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요구

4) 본고는 무역특화지수와 수입의존도 이외에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산출액, 부가가치액, 수출입 규모 등의 추이변화를 살펴보았다. 무역특화지수와 수입의존도는 수입을 통해 관세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산출액, 부가가치액 등은 관세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정책과 경제변수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관세정책의 효과에 한정하여 무역특화지수와 수입의존도 변화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변화추이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1980년 이후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분석한다. 총 산출액과 부가가치 창출액, 수출입 변화를 분석하고, 경쟁력 척도로 해석될 수 있는 수입의존도 및 무역특화지수의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1990년 이전의 실효보호율 변화 추이와 함께 1990년 이후의 실효관세율을 도출하여 실효관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역관세문제도 함께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관세율과 무역특화지수 및 수입의존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제Ⅴ장은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 현황 및 특징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변화와 이를 통해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관세율 정책의 변화는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과 관세율 분포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관세율 정책은 산업정책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추후에 논의할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및 실효관세율 변화 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변화

가. 1984년 이전⁵⁾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관세제도가 실시된 것은 1883년 한일통상협정이 체결된 이후이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인해 자주적인 관세정책을 펴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관세제도를 수립한 것은 1949년 정부 수립 이후로, 일제의 관세법규를 통합하여 전문 252조의 단일화된 관세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당시 관세율 수준은 건국초기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정수입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보완적으로 산업정책적 측면도 고려되었다.

이후 1950년 전쟁 발발과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 재정수요가 크게 상

5) 본 절의 내용은 재무부(1991년)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승하여 관세정책도 자연히 재정관세정책으로 치중되었다. 이에 의해 식량과 서적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고관세의 관세율 구조를 유지하였다.

이런 관세정책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부응하도록 재정비되면서 산업정책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1962년 처음으로 실시된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보호관세적 성격과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정책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중요 산업기계, 제1차 산품, 공업용 원자재 등에 대한 관세를 무세 혹은 저율로 책정하고 반제품, 완제품의 순서로 점차 고율로 과세하며, 기타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고율로 과세하였다. 특히, 장래 성장이 유망하거나 수출전용산업, 기간(基幹)산업 그리고 유치(幼稚)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고율로 과세하는 반면, 이들 산업에 이용되는 원자재는 저율로 과세하여 산업정책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1967년 4월 16일 우리나라는 GATT에 가입하면서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인 케네디 라운드에 참여하는 등 개방형 보호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진에 부응하기보다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관세정책상의 지원 및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율 개편이 실시되었다. 특히, 발전도약단계에 있는 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물품의 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수입되는 공업용 원자재의 세율은 인하 또는 유지함으로써 공업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1차 산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책정하였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었던 1973년에는 국내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관세율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은 이전의 38.8%에서 31.3%로 인하되었다. 이 당시는 특히 중화학공업의 지원에 초점을 두어 국산화되지 않거나 국산품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세율을 인하하였다.

이러한 관세율 개편은 그 후에도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될 때마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세율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산업별 관세정책이 주로 추진되었지만, 점차 고율 보호관세에 따른 문제점이 등장하면서 중간세율의 통합정리, 다단계세율의 축소, 가공도별 세율격차 완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1980년초 민간주도형 경제이념과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이 강조되면서 관세율에서도 국제경쟁력이 확립된 부문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커졌으며 반면 경쟁력이 미약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에 의한 보호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세율단계가 14단계에서 11단계로 축소 조정되었고, 완제품과 중간재의 세율역진이 시정되었으며, 유사물품간의 세율불균형도 시정되었다. 관세지원이 확대되어 중요산업에 소요되는 원자재 및 시설재의 관세율은 인하되었으며, 주로 내수용보다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나. 1984년 이후⁶⁾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 중심체계는 1983년까지 차등관세율 체계였다. 차등관세율 체계는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지되었다. 그러나 완제품에 대한 과도한 보호, 원자재 및 생산재에 대한 과소보호로 경제구조가 조립가공형 산업구조로 발전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1984년 이후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현행 기본관세율 체계의 기본구조가 된 균등관세율 체계는 1984년에 시작하여 1988년에 종료된 제1차 관세율 인하여시제와 1989년에 시작하여 1993년⁷⁾에 종료된 제2차 관세율 인하여시제에 의해 형성되었

6) 본 절의 내용은 재무부(1989년), 재무부(1991년), 정재호(2003b)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다. 두 차례에 걸친 관세율 인하예시제가 어떤 개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현행 기본관세율 체계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자.

1984년부터 시행된 제1차 예시제의 관세율 개편원칙은 첫째,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원료 관세율을 최고 30%에서 5~10%로 대폭 인하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기초원료 이외 타산업의 투입재, 생산재로 사용되는 품목의 관세율은 20%로 인하한다. 단, 국산재의 경쟁력에 따라 인하의 속도를 달리한다. 셋째, 소비재 과잉보호를 지양하여 40~80%에 이르던 소비재의 관세율을 20%로, 사치성 소비재는 30%로 낮춘다. 넷째, 농산물 중 기본식량, 사료, 공업용 원료 곡물은 5~10%의 관세율을, 농가소득원인 품목은 50%의 세율을 설정한다.

그 결과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의 정도가 줄어들고, 산업간 차별성도 줄어들어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1980년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관세율의 수준은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에 비해 높았다. 한편, 부분적으로 산업간, 품목간 실효보호율의 격차가 발생하였고, 일부 소비재에 대한 고세율 적용이 과보호 및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제1차 예시제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1989년부터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가 시행되었다.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의 구체적 개편 방식은 크게 원료와 중간재·완제품을 구분하여 관세율에 차이를 두고 다시 국산재와 수입재간의 경쟁 여부와 국산재의 경쟁력 정도에 따라 관세율의 수준 혹은 인하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료에 대해서는 비경쟁 품목은 1~2%의 관세율을 설정하고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3%의 관세율을 설정하였다. 둘째, 원칙적으로 중간재, 완제품 구분 없이 8%의 중심세율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경쟁력 확립

7) 1990년도 방위세 폐지에 따라 인하예시제를 1년씩 순연하여 1994년에 종료되었다.

제품, 국산화 불가능 제품, 그리고 절대부족 물품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인하를, 그 외에는 연차적으로 인하를 실시하였다. 특히, 세율이 20~30%인 사치품에 대해서도 8%의 중심세율을 적용하였다. 셋째, 중간재 중 1차 가공품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1984년 이후 10년간 두 차례에 걸쳐서 관세율 인하예시제를 시행한 결과 원료 1~3%, 중간재 5%, 그리고 완제품 관세율 8%의 균등관세율 체계가 지난 1994년에 완료되었다. 관세율 인하예시제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통하여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산업으로의 자원유입을 촉진하는 등 선진 경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관세율 인하예시제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은 선진국 평균관세율과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표 II-1> 제2차 관세율구조 개편원칙

(단위: %)

		1988	1989	1990/91	1992	1993	1994~
원료	비경쟁원료	5	1~2	1~2	1~2	1~2	1~2
	경쟁원료	10	5	5	5	4	3
중간재 및 완제품	중심세율(일반 공산품)	20	15	13	11	9	8
	경쟁력 확립 및 국산화 곤란 품목	10~20	10	10	10	9	8
	(1차 가공품)	(10~20)	(10)	(10)	(9)	(7)	(5)
	사치성 소비재	30~50	20	16	13	10	8

자료: 경제호(2003b).

그 후 균등관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조조정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1997년 당시 총 257개 품목에 관한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에너지·원료를 제외한 일부 원자재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지원하고, 둘째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이 낮아 경쟁국에 비해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섬유·신발 등에 대하여 관세율을 부분 인상하며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탄력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기본관세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997년 당시 가공식품과 수산물, 화학, 철강·금속, 기계·전자 그리고 고무와 목제품 등 182개 품목에 관한 관세율이 인하되었고, 섬유·의복과 신발 등 75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2000년에는 우선 농수산물에 대한 고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가공식품에 관한 역관세를 시정하기 위해 국산제품과 비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의 관세율이 20~50%에서 5~10%로 인하되었다. 이 밖에도 중국 등으로부터 저가로 수입되는 채소 가공품에 대하여 종가·종량 선택세를 적용하여 저가 제품의 대량 수입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ITA협정에 따라 무세화되는 제품의 부분품이나 원료로서 국산화 가능성이 없는 품목을 중심으로 세율을 8%에서 3~5%로 인하하여 역관세의 부담을 덜었다. 그리고 국내생산이 전혀 없거나 유사물품간 세율균형이 결핍되었거나 역진적인 품목의 세율이 조정되었다. 그 결과 2000년 개정의 특색은 관세율이 인상된 품목은 없으며, HS 10단위 42개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이 0~10%로 인하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2차례에 걸친 관세율 인하예시제와 1997년의 대폭적인 관세율 구조개편의 결과 우리나라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표 11-2>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

(단위: %)

가 공 도 별		1983	1984	1988	1989	1994	2000
중 심 세 율		20	20	20	15	8	8
원 료	비경쟁원료	5~30	5~10	5	1~2	1~2	1~2
	경쟁원료		10	10	5	3	3~4
중간재	경쟁력확립(1차가공품)	20~50	20~30	10~20	10	8(5)	5~8
완제품	일반 공산품	40~80	40~50	20~30	15	8	8
	경쟁력 취약						10~16

자료: 정재호(2003b).

2.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 및 분포 변화

이러한 관세율 정책의 변화와 정책적으로 추구한 관세율 구조 아래 전반적인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도 변화하였다. 단순평균관세율의 변화는 1960년대 중반 39%에서 관세인하예시제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1983년 23.7%로 낮아졌다. 그 후 관세인하예시제 등이 실시되면서 2000년 기준 평균관세율은 8.6%이다. 농산품의 관세율이 역시 공산품보다 높으며, 원자재의 관세율은 1983년 11.9%에서 2.5%로 낮아졌다. 중간재와 최종재의 세율차이도 1984년 6.0%에서 1990년 중반 이후 약 0.1%의 차이를 보여 평균관세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3> 단순평균관세율 변화 추이

(단위: %)

	1983	제1차 관세 인하예시제		제2차 관세 인하예시제					1997	1999	2000
		1984	1988	1989	1990/91	1992	1993	1994			
평균관세율	23.7	21.9	18.1	12.7	11.4	10.1	8.9	7.9	8.6	8.6	8.6
농 산 품	31.4	29.6	25.2	20.6	19.9	18.5	17.8	16.6	18.7	18.6	18.6
공 산 품	22.6	20.6	16.9	11.2	9.7	8.4	7.1	6.2	6.3	6.4	6.4
원 자 재	11.9	10.6	9.5	3.9	3.9	3.3	3.2	2.8	2.6	2.5	2.5
중 간 재	21.5	18.7	17.1	11.7	10.7	9.3	7.8	7.0	6.9	6.8	6.8
최 종 재	26.4	24.7	18.9	13.3	11.2	9.4	7.9	7.1	6.8	7.0	7.0

자료: 정재호(2003b).

2000년 이후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ITA 협정 등으로 무관세화가 추진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은 낮아졌다. 실행세율 기준으로 2004년에는 전체 단순평균관세율이 약 7.8% 수준이다.

관세율 수준과 함께 관세율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자.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우선 중심세율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1980년대 20%의 중심세율이 1994년부터 8%로 낮아졌으며, 그 후 8% 중심세율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중심세율이 8%로 결정된 이유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⁸⁾. 첫째, 1988년 당시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개도국들에 대해 시장개방과 관세인하를 요구하였다. 그 당시 OECD 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이 8%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이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둘째, 1998년 우리나라 공산품의 평균 국내외 가격차가 13%로 지난 5년 동안 40% 인하된 것을 감안하여 향후 5년 동안에도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경우 국내외 가격차이가 8% 수준으로 축소될 것을 감안하여

8) 재무부 관세국(1991), p. 78.

8%를 중심세율로 결정하였다. 한편 KDI에서도 당시 관세수입이 총재정수입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의 재정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이 8%라고 제시하기도 하였다⁹⁾.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이전에 비해 단계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세율단계의 수가 적고 집중도가 높다. 농산물은 무세에서 50%에 이르며 12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8%, 20%, 30%가 복수의 중심세율이 되고 있다. 공산품은 무세에서 30%에 이르며 총 1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8%가 압도적인 중심세율이다. 농산물과 공산품을 통틀어서는 전체적으로 16단계의 세율이 있고, 그 중 8%에 절반 이상의 품목이 분포되어 있다.

<표 11-4>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

(단위: %)

1983	세율별	0	5	10	15	20	25	30	40	50	100	총량		
	구성비	6.8	3.5	10.8	11.2	29.6	3.3	1.4	8.7	10.6	0.39	0.5		
1984	세율별	0	5	10	15	20	25	30	40	50	80	90	100	총량
	구성비	3.7	5.9	14.6	5.1	41.9	0.3	4.5	13.2	2.4	0.1	0.5	0.4	0.4
1988	세율별	0	5	10	15	20	30	50	100	총량				
	구성비	3.6	5.6	16.6	3.9	61.8	4.7	3.0	0.4	0.5				
1994	세율별	0	1~3	5	8	10	20	30	40	50	총량			
	구성비	5.5	15.6	11.5	60.0	0.3	1.4	2.8	0.9	1.4	0.7			
2000	세율별	0	1~3	5	8	10	13~16	20	25	30	40	50	총량	
	구성비	5.7	16.0	10.5	55.3	1.1	1.8	3.0	0.2	2.9	1.0	1.9	0.7	

자료: 박상태(2002).

9) 재무부 관세국(1991), p. 174.

실행관세율¹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8년 중심세율인 8%에 HSK 10단위 기준 61.44%의 세번이 분포되어 있어서 8%가 중심세율로서 절반 이상의 실행관세율이 이 구간에 속했다. 그러나 8% 구간에 속하는 세목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2003년 이후 절반이 안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41.6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선 기본관세율 체계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해 양허관세가 낮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ITA 협정에 따른 무관세화가 2004년까지 이루어지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실적관세율의 분포도 살펴보자. 본고에서 실적관세율은 한 해 동안 해당 HSK 10단위 품목별로 수입액 대비 얼마만큼의 관세가 징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관세율(관세징수액/수입액)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탄력관세, 관세감면 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관세환급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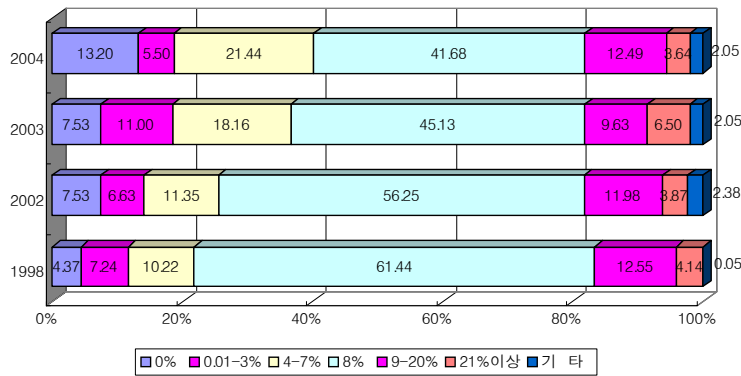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80% 정도가 9%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후 관세인하예시제를 통해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1995년에는 거의 절반이 4~7% 구간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8%의 실적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수도 30%에 이르렀다. 따라서 1990년에 거의 대부분의 세목이 9% 이상의 실적세율을 보인 반면 5년 후인 1995년에는 4~8% 구간에 거의 80%의 세목이 분포되어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8% 실적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수는 점차 감소하여 2003년 실적관세율에서는 19.58%로 나타났다. 9% 이상의 실적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8% 실적관세율이 적용되는 세번의 관세율이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이유는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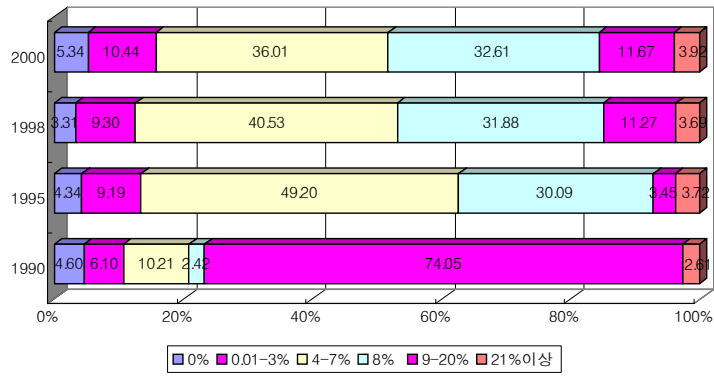
10) 본고에서 실행세율은 기본관세율과 WTO 양허세율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언급하였듯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결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000년 이후에도 4~7%의 세율 구간에 세목의 약 40~50%가 분포되어 있어 큰 변화는 없다. 다만, 3% 미만의 관세가 부과되는 구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세목 비중도 1998년 3.3%를 최소로 2003년에는 9.09%까지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도 역시 ITA 협정에 기인한 것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ITA 협정 이행이 마무리되는 2004년에는 원자재 등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2004년에는 그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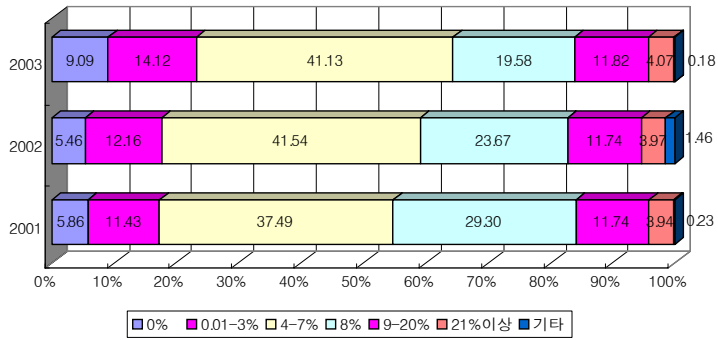
[그림 II-1] 실행관세율(1998, 2002~04년)



[그림 11-2] 실적관세율(1990~2000년)



[그림 11-3] 실적관세율(2001~03년)



Ⅲ.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이번 장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980년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¹¹⁾. 이런 시계열화 작업은 지난 20여년 동안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시계열화 작업 그 자체도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이에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총산출액, 부가가치 창출, 수출입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런 경제지표를 통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관세율 정책의 변화는 경제내의 자원배분을 변화시켜 이를 통해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의 일부분은 관세율 정책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고는 관세율 정책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기 때문에 경쟁력 지수로 해석될 수 있는 무역특화지수와 수입의존도지수도 지난 20여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무역특화지수와 수입의존도지수의 시계열화 작업에도 그 의의가 있겠지만, 이런 자료는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과 관련되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1) 제Ⅲ장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매 5년마다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에 근거하여 필자가 재분류 혹은 재계산하여 산출한 것이다.

산업별 산출액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자. 제조업을 크게 3부분으로 소비재 업종, 기초소재 업종, 조립가공 업종으로 나눌 경우 조립가공 업종의 비중은 1980년 7.3%, 1990년 15.0%에 2000년 19.2%로 크게 상승하였고, 기초소재 업종은 1980년 21.0%에서 1990년 17.1%로 약간 감소한 이후 1995년 17.4%, 2000년 17.1%로 1990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반면, 소비재 업종의 비중은 1980년 23.1%, 1990년 17.4%에서 1995년 12.5%, 2000년 10.2%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 중 음식료품이 1980년 10.8%, 1990년 7.0%에서 2000년 4.2%로 하락했으며, 섬유 및 가죽제품이 같은 연도 기준으로 8.4%, 6.8%에서 3.4%로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립가공 업종 중에서는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비중이 1980년 4.1%, 1990년 6.4%에서 1995년 7.9%, 2000년 10.2%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중 조립가공 업종의 비중은 19.2%로 높아졌다. 기초소재 업종은 앞서도 보았듯이 약 17%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석유 및 석탄제품이 1990년 2.1%에서 2000년 3.8%로 크게 상승한 반면, 비금속 광물제품, 제1차 금속제품이 0.6%p와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0여년 동안 같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농림어업의 산출액 대비 비중은 20여년 전에 비해 3분의 1로 감소하고, 광업 비중은 1980년 0.4%로 1995년까지 이 수준이 유지되었지만, 2000년에는 0.2%로 비중이 절반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산업별 산출액 구성비 추이

(단위: %)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농림어업	8.3	7.7	5.1	3.8	2.7
광업	0.4	0.4	0.5	0.4	0.2
제조업	51.4	50.3	49.6	47.6	46.5
소비재 업종	23.1	20.2	17.4	12.5	10.2
음식료품	10.8	9.1	7.0	5.0	4.2
섬유 및 가죽제품	8.4	7.3	6.8	4.1	3.4
목재 및 종이제품	1.9	1.6	1.6	1.5	1.2
인쇄, 출판 및 복제	0.5	0.7	0.7	0.9	0.7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5	1.5	1.3	0.9	0.7
기초소재 업종	21.0	19.9	17.1	17.4	17.1
석유 및 석탄제품	6.0	4.8	2.1	2.2	3.8
화학제품	7.0	7.0	6.3	6.4	6.4
비금속 광물제품	1.9	1.8	1.8	1.9	1.2
제1차 금속제품	5.1	4.9	5.1	5.0	4.1
금속제품	1.0	1.5	1.7	1.9	1.5
조립가공 업종	7.3	10.3	15.0	17.7	19.2
일반기계	1.1	1.7	3.1	3.6	3.1
전기 및 전자기기	4.1	5.0	6.4	7.9	10.2
정밀기기	0.4	0.4	0.4	0.5	0.5
수송장비	1.8	3.2	5.1	5.8	5.4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10.2	3.2	12.2	11.6	9.4
전력·가스·수도	2.2	2.3	1.7	1.8	2.3
건설	8.0	8.1	10.5	9.8	7.1
서비스	27.9	29.4	30.3	34.1	39.0
도소매	7.1	6.6	6.6	5.9	5.0
음식점 및 숙박	1.1	1.0	0.8	0.8	3.0
운수 및 보관	5.2	4.8	3.8	4.0	3.7
통신 및 방송	0.7	1.1	1.2	1.4	2.4
금융 및 보험	2.2	2.2	3.2	3.8	4.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2	4.8	6.3	8.6	9.9
공공행정 및 국방	3.6	3.3	3.3	3.1	3.1
교육 및 보건	2.8	3.7	3.5	4.8	5.2
사회 및 기타 서비스	2.0	2.1	1.6	1.7	2.2
기타	1.8	1.8	2.3	2.5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부가가치 창출액 변화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액은 198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다만, 광산업만이 1995년을 기점으로 2000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림수산업은 1980년 부가가치 창출액이 약 11조원에서 2000년에는 약 24조원으로 증가하였고, 광산업은 1995년 약 2조 2천억원을 기점으로 2000년에는 약 1조 7천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제조업은 1980년 이후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2000년에는 증가율이 둔화되어 43.25%에 그쳤다. 제조업을 크게 소비재 업종, 기초소재 업종, 조립가공 업종으로 나누었을 때 1980년 이후 조립가공 업종의 부가가치 창출이 눈에 띄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립가공 업종도 2000년에는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¹²⁾.

<표 III-3> 부가가치 증가율

(단위: %)

산 업	1985	1990	1995	2000
농림수산물	35.53	0.05	45.21	14.09
광산업	4.89	23.41	48.88	-24.68
제조업	68.88	107.29	120.96	43.25
소비재 업종	38.30	46.27	76.02	28.73
기초소재 업종	86.11	114.26	133.35	48.75
조립가공 업종	155.01	227.94	152.02	4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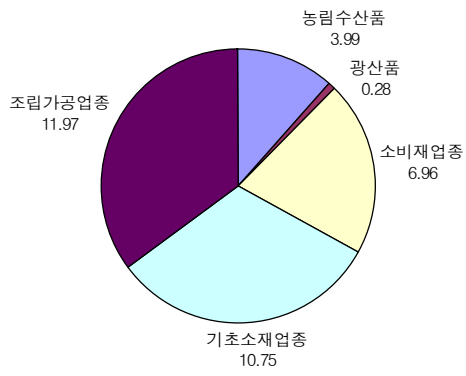
각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농림수산업과 광산업은 부가가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은 1980년 15.04%에서 2000년

12) 증가율은 5년 전 대비 증가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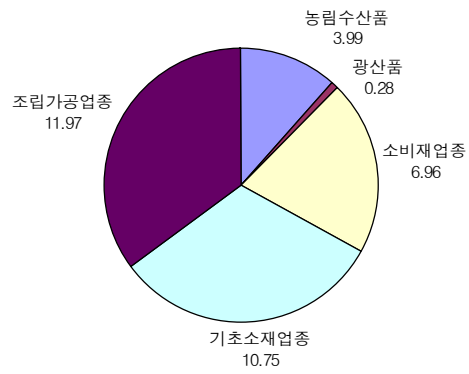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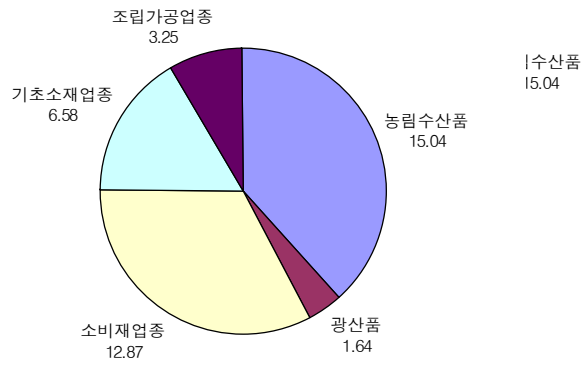
에는 3.99%로 약 4분의 1로 감소하였고, 광산업도 1980년 1.64%에서 2000년에는 0.28%로 크게 감소하였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5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그 비중이 33.05%에 이르렀으나 2000년에는 29.68%로 감소하였다. 제조업 중 소비재 업종은 198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속에 2000년의 비중이 6.96%이고 기초소재 업종은 1990년 이후 약 11%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립가공 업종은 12%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별 산업 중 전기 및 전자기기가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기준 6.49%로 눈에 띄게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음식료품과 섬유 및 가죽제품이 포함된 소비재 업종과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난 20여년간 부가가치 비중 변화를 보면, 농림수산업과 광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고 제조업 중에는 소비재 업종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신하여 기초소재 업종과 조립가공 업종의 비중 증가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¹³⁾.

13) [그림 III-1]은 전체 부가가치 비중 중 농림수산물, 광산물, 제조업(소비재 업종, 기초소재 업종, 조립가공 업종)의 비중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부문 등의 비중은 계산에 포함되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에서는 나타내지 않았다.



조립가공업종 2000년



<표 III-4> 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산 업	1980	1985	1990	1995	2000
농림수산물	15.04	13.79	8.09	5.57	3.99
광산물	1.64	1.16	0.84	0.59	0.28
제조업	22.70	25.94	31.53	33.05	29.68
소비재 업종	12.87	12.04	10.33	8.62	6.96
음식료품	5.04	4.52	4.00	3.19	2.66
섬유 및 가죽제품	6.21	5.47	3.79	2.79	2.32
목재 및 종이제품	0.68	0.82	0.96	1.02	0.89
인쇄, 출판 및 복제	0.34	0.46	0.64	0.83	0.52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60	0.76	0.92	0.79	0.57
기초소재 업종	6.58	8.29	10.41	11.53	10.75
석유 및 석탄제품	0.90	0.69	0.81	1.77	2.91
화학제품	2.65	3.31	4.14	4.30	3.63
비금속광물제품	1.10	1.33	1.70	1.56	0.97
제1차 금속제품	1.47	1.92	2.40	2.46	2.03
금속제품	0.47	1.04	1.37	1.44	1.21
조립가공 업종	3.25	5.61	10.79	12.90	11.97
일반기계	1.09	1.68	3.17	2.71	2.21
전기 및 전자기기	0.93	1.66	3.76	5.92	6.49
정밀기기	0.21	0.23	0.30	0.39	0.29
수송장비	1.02	2.04	3.56	3.88	2.98

총생산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율은 전 산업 기준 2000년 43%로 1995년의 44.7%에 비해 낮아져서 1990년 수준인 42.8%와 유사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부가가치율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00년에 하락한 것이다.

Ⅲ.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43

<표 III-5> 부가가치율

(단위: %)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일본 (2000년 ^{*)})
농림어업	69.8	66.7	66.1	65.6	62.4	55.5
광업	70.3	64.0	67.4	68.5	63.4	42.5
제조업	23.1	25.0	27.2	31.0	27.4	32.8
소비재 업종	23.2	24.3	25.6	30.8	28.6	37.9
음식료품	22.7	24.2	24.4	28.6	27.0	38.4
섬유 및 가죽제품	23.1	22.2	24.0	30.2	29.7	36.2
목재 및 종이제품	17.7	22.8	25.8	29.4	26.6	34.0
인쇄, 출판 및 복제	39.3	36.1	37.3	40.9	31.2	46.1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9.6	30.8	33.7	37.3	34.0	32.0
기초소재 업종	21.0	23.4	25.8	29.6	27.1	33.4
석유 및 석탄제품	18.8	19.3	16.5	35.7	32.8	39.7
화학제품	25.2	26.9	27.9	30.0	24.6	29.5
비금속광물제품	30.3	33.3	39.8	37.0	34.0	41.1
제1차금속제품	13.5	16.9	19.9	22.1	21.1	27.9
금속제품	25.2	30.1	32.1	33.1	34.5	43.8
조립가공 업종	28.8	29.5	30.7	32.5	26.9	29.2
일반기계	32.6	32.1	33.9	34.1	30.7	37.5
전기 및 전자기기	28.1	28.1	27.7	33.6	27.3	30.0
정밀기기	32.3	32.0	31.2	32.9	25.7	39.4
수송장비	27.6	30.0	32.2	29.9	24.0	22.4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41.3	44.3	46.9	42.4	44.4	47.0
서비스	62.5	64.3	65.7	65.2	62.0	64.1
전 산업	39.6	41.4	42.8	44.7	43.0	51.0

금속제품, 건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부가가치율 하락이 두드러졌으며,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조립가공 업종인 정밀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에서의 부가가치율 하락도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가가치율의 하락은 환율 및 유가상승 등으로 수입증가세 투입률이 높아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산업별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 음식료품이나 섬유 및 가죽제품의 부가가치는 별 변화가 없는 데 반해 조립가공 업종의 부가가치가 많이 하락하였고 서비스업에서도 부가가치율이 많이 감소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비교하여 전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일본의 51.0%에 비해 우리나라는 43.0%로 일본보다 낮다.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율도 일본이 32.8%로 우리나라의 27.4%보다 높다.

다. 수출입 변화

2000년 총수출액은 237조원으로 1995년의 113조 9천억원에 비해 2.1배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총산출액이 1.66배 증가한 것에 비해 더 높게 증가한 것이다.

2000년 수출상품별 구성비를 살펴보자.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농림수산물, 광산품, 공산품, 그리고 서비스 등 기타부문으로 구분할 경우 수출상품별 구성비는 공산품의 비중이 8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 등 기타품목 18.3%, 농림수산물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산품의 수출은 우리나라 특성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에 의한 공산품 수출은 1980년 73.8%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속에 1990년대 이후 약 1%p씩 그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농림수산물은 1980년 4.2%의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Ⅲ.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45

2000년에는 0.3%의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수출상품별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품이 전체의 0.1%를, 공산품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 등의 기타품목이 18.8%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의 경우 조립가공제품의 수출상품 비중이 63.5%로 우리나라에 비해 더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III-6> 수출상품별 구성비 추이

(단위: %)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일본 (2000년 ^P)
농림수산물	4.2	2.3	1.6	0.8	0.3	0.1
광산물	0.3	0.1	0.1	0.1	0.0	0.0
공산품	73.8	77.4	79.5	80.6	81.3	81.0
소비재 제품	39.7	35.8	31.4	18.6	13.3	3.1
기초소재제품	18.7	18.8	17.7	18.3	19.5	14.5
조립가공제품	15.4	22.8	30.4	43.6	48.5	63.5
기타	21.7	20.2	18.8	18.6	18.3	1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을 앞서 논의한 것처럼 소비재 제품, 기초소재 제품, 조립가공 제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두드러진 특징은 조립가공 제품의 수출비중은 크게 상승한 반면 소비재 제품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즉, 2000년중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한 조립가공 제품의 수출비중이 48.5%로 1980년의 15.4%에서 1990년 30.4%, 1995년 43.6%로 크게 증가한 반면, 섬유 및 가죽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제품의 수출비중은 2000년에 13.3%로 1980년의 39.7%에서 1990년 31.4%, 1995년 18.6%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 수출은 1980년대 소비재 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현재 조립가공 제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초소재 제품은 전반적으로 18% 내외 수준을 유지하면서 1980년 18.7%에서 2000년 19.5%로 약간의 상승이 나타났다. 이 중 석유 및 석탄제품의 수출비중이 1980년대에 비해 1990년 후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1차금속제품은 1980년 7.5%에서 2000년 4.3%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부 제품별로 살펴보면, 조립가공 제품의 전기 및 전자기기는 1990년 17.5%에서 2000년 30.5%로 약 10%p 이상 상승하였으며, 수송장비도 같은 기간 6.0%에서 13.0%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0년 당시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의 수출비중은 각각 7.9%와 4.9%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재 제품의 섬유 및 가죽제품은 1990년 25.0%에서 2000년 9.7%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출비중은 31.6%로 현재 전기 및 전자기기의 수출비중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다. 즉, 1990년대의 섬유 및 가죽제품 중심의 수출에서 2000년에는 전기 및 전자기기 중심의 수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47

<표 III-7> 수출 비중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농림수산물	4.18	2.34	1.58	0.83	0.30
광산물	0.32	0.13	0.13	0.05	0.03
공산물	73.77	77.42	79.48	80.56	81.38
소비재 업종	39.71	35.83	31.40	18.62	13.36
음식료품	2.25	2.02	2.21	1.62	1.29
섬유 및 가죽제품	31.58	29.28	24.97	14.35	9.73
목재 및 종이제품	2.48	0.72	0.84	0.84	0.94
인쇄, 출판 및 복제	0.06	0.06	0.09	0.12	0.15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3.34	3.75	3.29	1.69	1.25
기초소재 업종	18.67	18.76	17.71	18.33	19.49
석유 및 석탄제품	0.30	1.68	1.57	8.85	5.09
화학제품	5.78	5.37	6.67	2.09	8.42
비금속광물제품	1.96	1.02	0.78	0.42	0.44
제1차 금속제품	7.47	5.76	5.43	4.77	4.25
금속제품	3.16	4.92	3.25	2.19	1.30
조립가공 업종	15.39	22.83	30.37	43.61	48.52
일반기계	1.60	2.60	5.81	3.99	4.10
전기 및 전자기기	7.94	9.77	17.50	27.57	30.54
정밀기기	0.97	0.88	1.06	1.02	0.92
수송장비	4.88	9.59	6.00	11.04	12.97

수출률¹⁴⁾ 추이를 살펴보면, 전 산업 평균이 1980년대에 증가하다가

14) 수출률은 수출액/국내총산출액×100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어 해외에 중간재 혹은 소비, 투자 등 최종재로 수출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1990년 12.7%로 하락한 이후 200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농림수산품은 198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산품은 1990년 20.4%로 감소한 이후 1995년 22.9%, 2000년 29.8%로 계속 상승하였다. 특히 조립가공 제품의 수출률은 1990년 25.7%에서 2000년 43.1%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 중 수송장비의 수출률은 1990년 15.0%에서 2000년에는 41.2%로 크게 높아졌다. 전기 및 전자기기의 수출률도 50.8%에 이르고 있어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출률 49.2%와 함께 가장 높은 산업으로 국내 총산출 중 절반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섬유 및 가죽제품은 1990년대 들어 수출률이 주춤하고 있지만 198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참고로 일본의 전 산업 평균 수출률은 5.9%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다. 그러나 조립가공 제품의 수출률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8.4%로 가장 높은 편이다.

Ⅲ.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49

<표 III-8> 상품별 수출률 추이

(단위 : %)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일본 (2000년p)
농림수산물	5.6	3.9	3.9	3.0	1.8	0.5
광산물	10.6	5.4	3.2	1.8	2.6	0.8
공산물	19.0	22.4	20.4	22.9	29.8	15.2
소비재 제품	19.8	21.5	23.1	20.1	22.1	2.2
음식료품	3.2	2.9	4.0	4.4	5.2	0.5
섬유 및 가죽제품	37.7	43.3	47.0	47.0	49.2	7.9
목재 및 종이제품	19.7	6.6	6.7	7.4	12.5	2.2
인쇄, 출판 및 복제	1.6	1.3	1.5	1.8	3.6	0.4
가구 및 기타 제조업	45.7	52.4	33.7	24.1	29.7	6.8
기초소재 제품	14.7	17.2	13.2	14.2	19.4	8.5
석유 및 석탄제품	1.2	9.6	9.6	12.8	22.7	2.2
화학제품	17.7	19.3	13.4	18.8	22.5	11.5
비금속광물제품	13.6	7.9	5.4	3.0	6.1	7.0
제1차 금속제품	20.9	17.1	13.5	13.0	17.4	10.3
금속제품	44.3	42.9	23.6	15.2	14.6	3.8
조립가공 제품	29.2	34.3	25.7	33.3	43.1	28.4
일반기계	13.9	8.5	10.0	15.2	22.5	27.3
전기 및 전자기기	31.9	39.5	41.6	47.5	50.8	29.2
정밀기기	41.8	36.6	32.2	26.2	32.0	31.4
수송장비	29.5	39.6	15.0	25.8	41.2	27.6
기타	5.4	4.0	5.4	5.1	6.2	1.6
전 산업	13.3	14.5	12.7	13.5	17.0	5.9

공산품의 경우, 소비재 제품이 1990년 13.0%에서 2000년 10.0%로 낮아지고, 기초소재 제품도 같은 기간 27.4%에서 20.4%로 큰 폭 하락하였다. 반면 조립가공 제품은 34.5%에서 36.7%로 소폭 상승하였다. 기초소재 제품 중에서는 화학제품이 1990년 12.2%에서 2000년 8.0%로 4.2%p 하락하여 기초소재 제품의 하락을 주도하였으며, 조립가공 제품의 경우 전기 및 전자기기의 수입비중이 1990년 13.4%에서 2000년 21.5%로 8.1%p 상승하여 조립가공 제품의 상승을 주도한 반면 조립가공 제품의 일반기계는 같은 기간 수입비중이 13.9%에서 8.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의 수입비중 21.5%는 여타 산업 중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광산품의 16.7%, 소비재 제품 10.0%, 기초소재 제품 20.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결국 전기 및 전자기기의 수출상품 비중이 2000년 30.5%로 크게 증가한 것과 함께 수입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이 가지고 오는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표 III-10> 수입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농림수산물	10.10	8.44	5.7	4.3	2.3
광산물	17.75	16.00	12.4	10.1	16.7
공산물	62.70	67.06	74.8	75.3	67.1
소비재 업종	9.98	10.64	13.0	13.0	10.0
음식료품	4.03	3.19	4.7	4.1	3.7
섬유 및 가죽제품	3.25	4.13	4.5	4.7	3.3
목재 및 종이제품	1.82	2.42	2.7	2.8	1.7
인쇄, 출판 및 복제	0.16	0.20	0.2	0.3	0.3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0.72	0.70	0.8	1.1	0.9
기초소재 업종	19.25	24.89	27.4	24.5	20.4
석유 및 석탄제품	2.53	3.06	4.4	4.2	4.6
화학제품	8.47	11.32	12.2	9.7	8.0
비금속광물제품	0.62	1.03	1.3	1.0	0.7
제1차 금속제품	6.76	8.16	8.5	8.6	6.3
금속제품	0.87	1.32	1.0	0.9	0.7
조립가공 업종	33.47	31.53	34.5	37.8	36.7
일반기계	17.14	14.41	13.9	14.4	8.1
전기 및 전자기기	8.07	10.09	13.4	13.8	21.5
정밀기기	2.64	3.58	3.3	4.6	3.8
수송장비	5.62	3.45	3.9	4.9	3.3

2. 수입의존도 변화 추이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무역정책을 유지하면서 관세정책도 수입억제와 함께 수출지원에 무게를 두고 시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관

세율은 소비재, 중간재 등 수입재의 성격과 국산화 가능성 여부에 따라 차등화되었고 관세환급제도나 감면제도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극 활용되었다. 그 결과 완제품 산업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수입의존도가 낮은 반면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본 절에서는 1980년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의 산업별 그리고 용도별로 수입의존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관세율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수입의존도 개념

본고에서 수입의존도(import dependency)는 수입에 의해 충족되는 내수(內需)의 비율로 정의한다. 이것은 수입이 내수시장에 침투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여 수입침투율(import penetration ratio)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수입의존도는 수입에 대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수입의존도에 관한 연구로 유정호(1995)를 들 수 있다. 유정호(1995)는 국제비교를 통해 수입의존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생산성 증대를 동반하지 않는 인위적인 수입축소나 국산화율 제고는 결국 수출감소라는 희생을 동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유정호는 대만의 예를 들어 높은 수입의존도가 무역적자의 결정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수입을 통하여 절약된 자원이 수출생산에 투입될 때 대외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논한다.

유정호(1995)의 수식을 빌려 생산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설명하면 아래 식으로 표현된다.

$$Y + E = X + M$$

여기서 Y, E, M, X는 각각 국내수요, 수출, 수입, 국내생산을 의미하

는데 상기 균형식은 Y와 E, 즉 국내수요와 해외로부터의 수요의 합인 총수요가 국내생산이나 수입을 통하여 충족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재화 j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있어서, j의 수입의존도를 MD_j라 하면, MD_j는 다음의 식으로 표시된다.

$$MD_j = \frac{M_j}{Y_j} = \frac{M_j}{X_j + M_j - E_j}, \quad 0 < D_j < 1$$

만약 국내수요가 모두 수입으로 충족된다면 수입의존도는 1의 값을 갖게 되며 수입이 전혀 없다면 이는 0의 값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관세 등 산업보호정책을 무시한다면 이 수치가 높을수록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이 낮고, 반대의 경우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수입의존도는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늘어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증가하면 그 수치가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경쟁력으로 해석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분명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¹⁵⁾. 그러나 내수를 충족시키는 데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수입의존도 이외에는 마땅한 다른 지표가 없다.

나. 2000년 산업별 수입의존도

2000년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구조에서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총수요 기준으로 농림수산물(12.9%), 소비재 업종(17.7%), 기초소재 업종(20.3%), 조립가공 업종(36.7%) 그리고 광산물(93.9%)의

15) 한편 수출편향적인 무역정책도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상기 식에서 분모를 감소시켜 수입의존도의 상승을 유발한다. 수입의존도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유정호(199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순으로 수입의존도가 높다.

둘째, 이러한 수입의존도는 중간재, 소비재 그리고 투자재 등 수입 품 용도에 따라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¹⁶⁾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의 상당 비중을 중간재가 차지하므로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총수요의 수입의존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셋째, 조립가공 업종의 경우 총수요 수입의존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는데, 이는 투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중간재 수입의존도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립가공 업종의 소비재 수입의존도는 다른 산업에 비해 낮다. 이는 조립가공 업종이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하면서 소비재에 대해서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밀기기가 있다. 정밀기기는 높은 수입의존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넷째,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소비재 수입의존도가 낮는데 이는 조립가공 업종처럼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관세율을 포함한 수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물과 이와 유사한 음식료품의 관세율은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보다 높다.

다섯째, 수송장비의 소비재 수입의존도가 3.5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장비의 관세수준은 다른 산업 혹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관세장벽 이외의 수입장벽으로 인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수입의존도로만 관세정책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수입의존도의 취약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 추이를 살펴보면 제한된 자원이 어느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한 현상이 바람직한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세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겠다. 관세율 정책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데 있다.

16) 이 구분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의한 것이다.

<표 III-11> 교역재산업의 총수요와 용도별 수입의존도(2000년)

(단위: %)

	총수요	중간재	소비재	투자재
농림수산물	12.9	16.15	5.67	11.48
광산물	93.9	93.72	-4.65	-
제조업	26.1	25.79	14.80	41.41
소비재 업종	17.7	19.37	15.38	10.34
음식료품	13.7	19.28	9.69	-
섬유 및 가죽제품	25.2	24.98	25.56	6.27
목재 및 종이제품	21.7	20.50	31.66	-
인쇄, 출판 및 복제	7.0	5.18	13.16	-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4.2	14.41	40.24	10.67
기초소재 업종	20.3	20.19	17.84	-18.80
석유 및 석탄제품	21.0	24.66	10.86	-
화학제품	21.9	21.36	27.30	-
비금속광물제품	9.9	8.61	79.16	-
제1차 금속제품	24.1	22.93	644.37	0.00
금속제품	8.7	7.17	35.49	15.27
조립가공 업종	36.7	37.96	11.35	41.89
일반기계	36.8	25.84	8.44	49.91
전기 및 전자기기	42.4	49.95	13.20	35.11
정밀기기	66.4	47.33	49.84	84.31
수송장비	15.4	13.72	3.58	21.59

다. 수입의존도의 변화

1) 총수요

우리나라 2000년의 수입의존도는 1995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20여년간 산업별로 전체적으로 수입의존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농림수산품의 수입의존도는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약 3%p 정도 상승하였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결과에 따른 높은 무역장벽 때문으로 여겨진다. 반면, 2000년에는 수입의존도가 낮아졌다. 광산품은 지속적으로 수입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초 원자재인 광산품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재 업종의 수입의존도는 1980년 7%로 기초소재 업종과 조립가공 업종에 비해 매우 낮았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는 17.7%에 이르렀다. 기초소재 업종은 약 20%의 수입의존도를 지난 20여년간 유지하고 있다. 조립가공 업종은 1980년대 40%대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다가 1990년대 32%대로 낮아졌고 2000년에는 다시 36.7%로 약 4%p 상승하였다. 그 결과 중공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 업종과 경공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소비재 업종의 수입의존도 차이는 소비재 업종의 수입의존도 증가로 약 10%p 정도 줄어들었다.

소비재 업종의 모든 산업에서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입의존도는 1980년 7.5%에서 2000년 25.2%로 상승하였다. 이는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의존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97년 섬유 관련 품목의 관세율 인상으로 2000년의 수입의존도가 1995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입의존도 증가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여겨진다.

기초소재 업종의 수입의존도는 약 2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다

만, 금속제품만이 수입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립가공 업종의 일반기계 수입의존도도 1980년 62.8%에서 1985년 48.4%로 낮아진 이후 2000년 36.8%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밀기기는 약 65%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지난 20여년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수송장비는 1980년 수입의존도가 39.7%에서 1985년 24%로 크게 낮아진 이후 1990년대부터는 약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59

<표 III-12> 교역재산업 총수요 수입의존도 추이(1980~2000년)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농림수산물	12.8	11.6	14.9	15.0	12.9
광산품	70.7	71.0	72.0	80.2	93.9
제조업	19.0	19.8	21.4	23.7	26.1
소비재 업종	6.7	7.9	11.7	16.5	17.7
음식료품	4.7	4.3	9.1	11.5	13.7
섬유 및 가죽제품	7.5	11.4	13.8	24.7	25.2
목재 및 종이제품	15.4	17.2	20.7	22.8	21.7
인쇄, 출판 및 복제	4.7	3.8	4.2	5.6	7.0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5.5	14.1	11.8	18.7	24.2
기초소재 업종	16.8	19.4	20.4	20.0	20.3
석유 및 석탄제품	9.2	11.8	19.9	25.0	21.0
화학제품	21.2	23.8	24.5	22.2	21.9
비금속광물제품	6.1	8.7	9.2	7.8	9.9
제1차 금속제품	21.2	22.3	21.7	23.3	24.1
금속제품	17.5	15.9	10.2	7.4	8.7
조립가공 업종	50.0	42.1	32.8	32.7	36.7
일반기계	62.8	48.4	43.2	42.1	36.8
전기 및 전자기기	38.3	44.4	34.4	33.7	42.4
정밀기기	60.0	67.4	64.1	64.4	66.4
수송장비	39.7	24.0	14.6	14.9	15.4

2) 중간재

제조업 부문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지난 20여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1980년에 비해 2000년에는 약 3%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총수요의 수입의존도에서 보듯이 소비재 업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상승 추세에 있고, 기초소재 업종과 조립가공 업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도 총수요 수입의존도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기초소재 업종의 수입의존도는 지난 20여년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초소재 업종 중 금속제품의 총수요 수입의존도가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이는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금속제품의 소비재 수입의존도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전체적인 수입의존도에 중간재가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수송장비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감소하여 1980년 53.3%에서 2000년 13.7%로 감소하였다. 또한 일반기계와 정밀기기 또한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즉, 조립가공 업종 중 전기 및 전자기기만 2000년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1995년에 비해 10%p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비재 업종에서는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1980년대 초 8%에 달하던 중간재와 완제품의 관세율 격차가 그 후 점차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지며 국내자원이 조립가공 업종으로 유입되고 소비재 업종에서는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재 업종이 1980년대 이후로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섬유 및 가죽, 목재 및 가구산업에서 수입의존도가 심화된 것은 소비재 업종이 퇴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재 업종의 퇴보는 합판, 면, 모직물, 생사 등의 경공업제품에 대한 조정관세를 유발하였으나 이들 산업의 수입의존도가 감소하지 않았다.

<표 III-13> 교역재산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 추이(1980~2000년)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농림수산물	15.5	16.7	22.0	21.5	16.2
광산물	71.8	71.8	72.0	80.2	93.7
제조업	22.2	22.3	22.3	23.8	25.8
소비재 업종	13.4	14.2	16.5	20.3	19.4
음식료품	15.0	12.7	18.4	15.2	19.3
섬유 및 가죽제품	11.5	14.8	16.3	30.7	25.0
목재 및 종이제품	15.0	17.0	20.0	23.6	20.5
인쇄, 출판 및 복제	5.4	3.8	2.1	4.2	5.2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5.6	23.2	9.8	13.9	14.4
기초소재 업종	19.9	20.4	20.7	20.6	20.2
석유 및 석탄제품	11.6	13.0	19.4	27.2	24.7
화학제품	26.5	27.1	26.6	24.1	21.4
비금속광물제품	6.6	8.2	7.8	7.1	8.6
제1차 금속제품	22.4	21.2	21.2	22.7	22.9
금속제품	20.3	15.7	10.2	7.4	7.2
조립가공 업종	49.2	41.9	32.9	32.6	38.0
일반기계	53.0	39.8	31.2	33.0	25.8
전기 및 전자기기	43.1	48.0	40.5	39.2	49.9
정밀기기	64.7	56.1	45.2	48.1	47.3
수송장비	53.3	30.3	19.6	17.1	13.7

3) 소비재

소비재의 수입의존도는 소비재수입/소비수요로 계산된다. 전반적으로 1980년 당시에는 관세율을 비롯하여 각종 무역장벽이 소비재 수입

을 제한하여 낮은 수입의존도를 보였으나 소득이 증가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폐지됨에 따라 소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림수산품은 여전히 높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으로 소비재 수입의존도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재 업종은 1980년대 2% 수준의 소비재 수입의존도가 2000년에는 15.4%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입의존도 증가가 눈에 띄인다.

총수요 및 중간재 수입의존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기초소재 업종에서도 소비재 수입의존도는 1985년 4.3%에서 2000년에는 17.8%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금속광물제품과 금속제품의 상승에 기인한다¹⁷⁾.

전반적인 증가추세 속에 전기 및 전자기기의 소비재 수입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 정밀기기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정밀기기의 소비재 수입의존도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중간재보다는 소비재 쪽으로 수입성향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송장비에서도 총수요 및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감소하는 추세와는 달리 소비재 수입의존도는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 제1차 금속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것은 급격한 재고 변화에 의한 것이다.

Ⅲ.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63

<표 III-14> 교역재산업의 소비재 수입의존도 추이(1980~2000년)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농림수산물	3.6	1.4	2.8	5.2	5.7
광산물	0.0	0.6	-0.2	-1.3	-4.7
제조업	2.8	2.8	7.0	12.2	14.8
소비재 업종	2.7	1.7	5.4	12.2	15.4
음식료품	2.5	1.3	3.9	9.1	9.7
섬유 및 가죽제품	2.6	1.0	5.9	16.2	25.6
목재 및 종이제품	4.6	7.2	48.9	9.8	31.7
인쇄, 출판 및 복제	3.4	3.8	8.2	9.4	13.2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0.9	12.0	18.2	29.7	40.2
기초소재 업종	2.5	4.3	11.8	14.3	17.8
석유 및 석탄제품	0.4	3.4	17.5	18.1	10.9
화학제품	3.7	3.1	7.3	10.3	27.3
비금속광물제품	4.6	17.3	36.7	28.0	79.2
제1차 금속제품	0.0	0.0	0.0	-0.3	644.4
금속제품	7.7	16.7	10.3	16.4	35.5
조립가공 업종	8.5	13.5	8.7	10.8	11.4
일반기계	12.2	2.6	8.1	8.0	8.4
전기 및 전자기기	6.2	19.9	14.4	14.8	13.2
정밀기기	22.2	21.0	45.6	38.4	49.8
수송장비	0.4	0.1	1.1	3.8	3.6

4) 투자재

투자재의 수입의존도는 투자재 수요 중 투자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 투자재의 수입의존도에서 큰 특징은 농림수산업, 소

비재 업종 및 기초소재 업종에 비해 조립가공 업종의 투자재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정밀기기의 투자재 수입의존도는 2000년 84.3%로 계속해서 전 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밀기기의 소비재 수입의존도는 증가 추세,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감소 추세, 그리고 투자재의 수입의존도는 계속 높은 수준이라면 이는 곧 정밀기기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III.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65

<표 III-15> 교역재산업의 투자재 수입의존도 추이(1980~2000년)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농림수산물	7.9	2.7	7.4	14.0	11.5
광산물	-	-	-	-	-
제조업	60.7	45.7	39.1	37.5	41.4
소비재 업종	10.9	2.2	3.6	7.2	10.3
음식료품	-	-	-	-	-
섬유 및 가죽제품	34.0	5.0	6.2	11.7	6.3
목재 및 종이제품	-	-	-	-	-
인쇄, 출판 및 복제	-	-	-	-	-
가구 및 기타 제조업	5.6	1.8	3.4	7.1	10.7
기초소재 업종	-192.5	-42.3	21.3	4.5	-18.8
석유 및 석탄제품	-	-	-	-	-
화학제품	-	-	-	-	-
비금속광물제품	-	-	-	-	-
제1차 금속제품	0.0	0.0	0.0	0.0	0.0
금속제품	23.0	22.7	7.6	3.2	15.3
조립가공 업종	61.6	47.3	41.0	39.4	41.9
일반기계	78.5	55.8	54.1	51.2	49.9
전기 및 전자기기	41.9	46.8	29.8	30.2	35.1
정밀기기	70.1	85.5	91.1	76.8	84.3
수송장비	39.5	21.2	16.7	17.4	21.6

일반기계의 투자재 수입의존도도 정밀기기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약간의 감소추세는 있지만 1980년 중반 이후 5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기 및 전자기기의 투자재 수입의존도는 1980년에 비해 1985년에 46.8%의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1990년에는 29.8%로 약 17%p

정도 크게 감소하였다. 약 30%의 수준이 1990년대에 유지되다가 2000년에는 35.1%로 5%p 정도 상승하였다.

3. 무역특화지수 변화

가. 무역특화지수의 개념

산업정책상의 고려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현재 경쟁력이 없으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을 통해 일정기간 적절한 보호를 해준다’든지, ‘잠재력이 없는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을 허용하여 국내 자원의 다른 부분으로의 재배분을 유도한다’든지, ‘경쟁력이 충분한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계량화된 지수로 나타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역성과를 기초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국내외 가격의 비교(가격경쟁력)나 비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설문조사나 지수화를 이용하는 것이다¹⁸⁾. 이 연구에서는 구득이 용이한 수출입 통계를 이용한 무역성과에 기초한 지표 중의 하나인 무역특화지수를 사용한다. 무역성과를 이용한 지표로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와 같이 국제 수출시장에서의 성과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으나,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수입대항력(輸入對抗力)이라는 개념¹⁹⁾을 반영하고 있는 무역특화지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명 경쟁력지수로 불리기도 하는 무역특화지수는 전체 수출입 합계에서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18) 한국산업은행 조사부(1994) 「국내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실태분석」, p. 25.

19) 한국산업은행(1994)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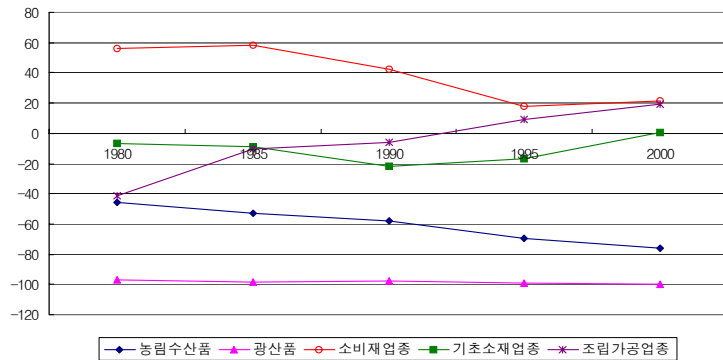
$$\text{무역특화지수} = \frac{\text{수출} - \text{수입}}{\text{수출} + \text{수입}} \times 100$$

한 산업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동일할 경우 무역특화지수는 0으로 나타나며, 한 산업의 수입이 수출보다 클 경우에는 음(-)의 숫자로, 수출이 수입보다 클 경우 양(+)의 숫자로 나타나게 되며, 그 숫자의 절대값이 클수록 수출입 차이의 비중이 큰 것으로 즉, 수출 혹은 수입 한 쪽에 치우쳐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의 가장 큰 값은 100으로 수입 없이 모두 수출을 하는 산업일 경우에 나타나며, 이와 반대로 가장 작은 값은 -100으로 수출 없이 모두 수입을 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산업은 100과 -100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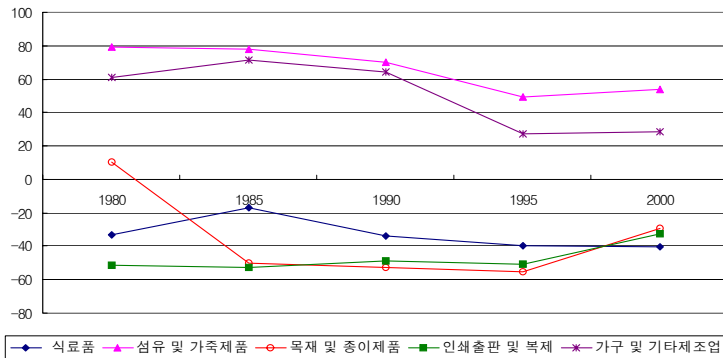
각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의 무역특화지수는 예상대로 음(-)으로 나타나며 점차 그 절대값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품은 대부분 수출은 거의 없으면서 수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무역특화지수는 음(-)이며, 그 값도 -100에 가깝게 나타난다. 소비재 업종의 무역특화지수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반면 조립가공 업종의 무역특화지수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2]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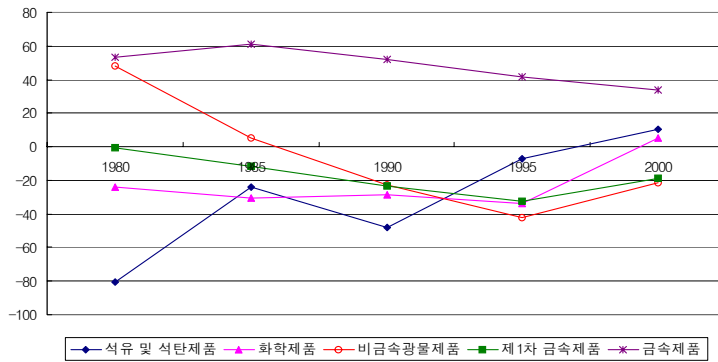
소비재 업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의 무역 특화지수는 큰 변화 없이 음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00년에는 음의 절대값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음식료품도 음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절대값은 인쇄 출판 및 복제산업에 비해 작은 편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높은 관세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섬유 및 가죽제품 그리고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은 양의 무역특화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산업 모두 1995년을 기점으로 무역 특화지수 값이 크게 작아졌다.

[그림 III-3] 소비재 업종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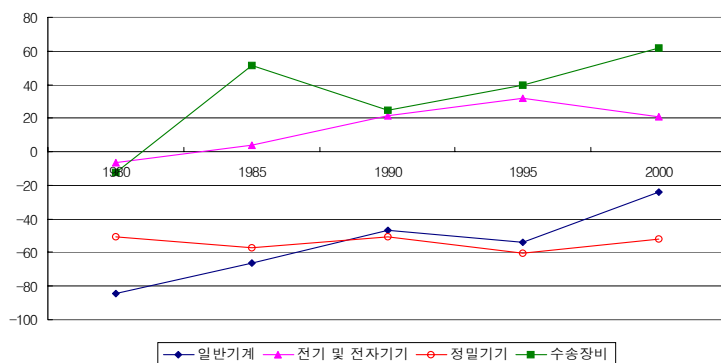
기초소재 업종은 2000년 들어 처음으로 양의 무역특화지수 값이 나타났다. 이는 석유 및 석탄제품, 그리고 화학제품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데, 두 산업 모두 2000년에 처음으로 양의 무역특화지수 값을 가진다. 석유 및 석탄제품은 1980년대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무역특화지수가 -80.75로 매우 낮았으나, 2000년에는 수출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유산업의 특징인 제품의 연산성과 초과공급 등의 결과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비금속광물제품의 무역특화지수는 1980년대 양의 값에서 1990년 이후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금속제품도 1985년을 기점으로 무역특화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은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III-4] 기초소재 업종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조립가공 업종의 무역특화지수는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1995년 이후 양의 무역특화지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송장비와 전기 및 전자기기의 무역특화지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송장비는 1985년 양의 무역특화지수로 전환된 이후 1990년 24.64, 1995년 39.39, 2000년 61.59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기기도 1985년 3.95에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31.81이었으며, 2000년에는 주춤하여 20.73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기계도 무역특화지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절대값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조립가공 업종 중 정밀기기는 20여년간 큰 변화가 없이 -50~-6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III-5] 조립가공 업종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표 III-16> 무역특화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농림수산물	-45.87	-52.63	-58.09	-69.13	-76.12
광산품	-96.80	-98.17	-97.96	-99.06	-99.64
제조업	-38.51	3.33	-39.77	3.51	14.67
소비재 업종	56.24	58.01	42.77	18.13	21.41
음식료품	-33.23	-17.24	-34.10	-39.90	-40.27
섬유 및 가죽제품	79.43	77.59	70.17	49.28	53.88
목재 및 종이제품	10.05	-49.99	-53.02	-55.12	-29.25
인쇄, 출판 및 복제	-51.25	-52.39	-49.03	-50.73	-32.2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61.18	71.58	64.20	27.27	28.68
기초소재 업종	-6.95	-8.56	-21.67	-16.78	0.80
석유 및 석탄제품	-80.75	-23.98	-48.28	-7.07	10.24
화학제품	-24.12	-30.68	-28.54	-33.83	5.51
비금속광물제품	47.88	5.05	-22.76	-42.48	-21.35
제1차 금속제품	-0.40	-11.76	-23.31	-32.42	-18.55
금속제품	53.16	61.21	52.06	41.77	33.89
조립가공 업종	-41.60	-10.55	-6.02	8.92	19.45
일반기계	-84.52	-66.48	-46.97	-53.75	-23.88
전기 및 전자기기	-6.27	3.95	21.52	31.81	20.73
정밀기기	-50.29	-57.08	-50.59	-60.63	-52.11
수송장비	-12.48	51.27	24.64	39.39	61.59

다. 세부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특징

무역특화지수가 지난 20여년 동안 양(+)의 값을 유지한 산업으로는 수산가공품, 섬유사를 제외한 섬유 및 가죽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철강, 금속제품, 가정용 전기기기, 자동차 및 부분품, 선박 등이 있다.

수산물, 수산가공품은 무역특화지수가 감소하여 점차 수입 특화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수산물의 경우 2000년 무역특화지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제품, 철강1차제품은 무역특화지수가 양(+)이지만 그 값은 그리 크지 않으며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무역특화지수가 20~3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철강1차제품의 경우 그 값이 점차 감소하여 1995년에는 5.84까지 하락하였으나 2000년에 다시 순수출(수출-수입)이 증가하여 그 값이 28.45로 증가하였다. 가정용 전기기기의 무역특화지수는 1985년 이후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및 부분품의 무역특화지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1980년의 27.0에서 2000년 75.30으로 증가하여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신장된 측면이 물론 크지만, 자동차 수입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억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선박도 1980년과는 달리 1985년 이후 급격하게 무역특화지수가 상승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부상했다.

<표 III-17> 무역특화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수산가공품	98.52	98.12	69.39	38.58	2.03
섬유직물	71.10	64.88	57.98	64.66	69.93
기타 섬유제품	63.76	66.30	53.95	51.15	70.27
의류 및 장신품	98.70	98.87	93.49	66.16	57.40
가죽제품 및 모피	72.27	76.71	79.40	37.62	43.71
기타 제조업제품	60.51	71.95	65.31	32.09	32.88
고무제품	85.80	71.59	65.95	60.56	63.13
플라스틱제품	26.84	34.63	22.06	19.78	26.49
철강1차제품	34.65	17.35	13.14	5.84	28.45
금속제품	53.16	61.21	52.06	41.77	33.89
가정용 전기기기	52.43	71.77	78.39	69.95	75.19
자동차 및 부분품	27.00	42.11	39.81	57.92	75.30
선박	6.73	79.60	60.27	58.76	62.80

이와 반대로 무역특화지수가 지난 20여년 동안 음(-)의 값을 유지한 산업으로는 농림산물인 작물, 축산, 임산물, 광산품인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석, 비금속광물, 음식료품 중 육류 및 낙농품, 제당 및 전분, 조미료 및 유지, 배합사료 등이 있으며, 인쇄, 출판 및 복제, 화학제품 중 유기화학 기초제품, 무기화학 기초제품, 의약품 및 화장품, 기타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인 유리제품, 1차금속제품인 선철 및 강반성품, 비철금속피 및 1차제품, 일반기계제품인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와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이 밖에 전기기계 및 장치, 정밀기기, 기타 수송장비 등이 있다.

농림산물인 작물, 축산, 임산물과 광산품인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석, 음식료품의 육류 및 낙농품 등은 수입이 수출에 비해 압도

적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이며, 특히 광산품의 수입비중은 거의 100%에 가깝다. 제1차 금속제품의 선철 및 강반성품의 무역특화지수도 1980년 -36.58에서 2000년에는 -90.51로 수입특화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유기화학 기초제품,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등은 무역특화지수가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III-18> 무역특화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작물	-76.09	-80.83	-81.92	-94.29	-89.48
축산	-90.55	-74.84	-71.31	-95.77	-94.24
임산물	-89.84	-77.25	-83.04	-72.90	-68.40
석탄	-100.00	-100.00	-100.00	-99.99	-99.97
원유 및 천연가스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금속광석	-90.78	-99.00	-97.74	-99.72	-99.43
비금속광물	-47.12	-66.57	-60.01	-75.26	-77.10
육류 및 낙농품	-81.85	-88.72	-86.29	-85.60	-90.04
제당 및 전분	-41.60	-50.03	-57.31	-66.50	-63.73
조미료 및 유지	-30.06	-62.81	-70.23	-71.58	-73.07
배합사료	-91.23	-98.73	-80.88	-77.09	-66.98
펄프 및 종이	-48.79	-63.24	-54.76	-42.07	-15.49
인쇄,출판 및 복제	-51.25	-52.39	-49.03	-50.73	-32.28
유기화학 기초제품	-76.41	-69.45	-67.20	-36.21	-7.15
무기화학 기초제품	-45.48	-71.71	-71.10	-64.83	-54.39
의약품 및 화장품	-41.82	-50.81	-33.09	-28.69	-34.03
기타 화학제품	-82.67	-54.88	-37.55	-35.90	-36.42
유리제품	-38.10	-44.96	-46.10	-64.64	-13.05
선철 및 강반성품	-36.58	-69.40	-84.52	-89.48	-90.51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56.19	-64.39	-60.91	-57.47	-47.04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85.22	-74.61	-66.38	-51.78	-11.87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87.90	-84.88	-71.47	-55.34	-33.32
전기기계 및 장치	-52.60	-41.83	-24.34	-19.82	-24.70
정밀기기	-50.29	-57.08	-50.59	-60.63	-52.11
기타 수송장비	-80.29	-69.49	-58.11	-68.06	-24.29

이러한 무역특화지수의 변화 중에서 그 변화추세가 뚜렷한 산업만을 정리하여 보았다. 무역특화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산업 중에서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와 화학섬유는 각각 1995년과 1990년을 기점으로 무역특화지수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어 수출 특화쪽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밖에 유기화학 기초제품, 일반 기계제품인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와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는 무역특화지수가 음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무역특화지수가 하락하는 산업으로는 우선 수산물, 비료 및 농약, 도자기 및 점토제품이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어 수입 특화쪽으로 완전히 전환되었고, 수산가공품, 빵, 과자 및 국수류는 아직 무역특화지수는 양(+)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뚜렷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선철 및 강반성품과 조미료 및 유지는 무역특화지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서도 계속적으로 수입비중이 증가하면서 무역특화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19> 무역특화지수 변화

		산 업	1980	1985	1990	1995	2000
계속 상승	(-) → (+)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51.43	-25.04	-20.59	38.96	52.70
		화학섬유	-40.02	-14.74	21.20	58.44	62.04
	(-) → (-)	유기화학 기초제품	-76.41	-69.45	-67.20	-36.21	-7.15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85.22	-74.61	-66.38	-51.78	-11.87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87.90	-84.88	-71.47	-55.34	-33.32
계속 하락	(+) → (-)	수산물	82.91	65.40	45.76	23.37	-2.94
		비료 및 농약	72.74	38.12	20.80	-13.63	-25.19
		도자기 및 점토제품	47.70	29.34	-29.39	-52.69	-64.30
	(+) → (+)	수산가공품	98.52	98.12	69.39	38.58	2.03
		빵, 과자 및 국수류	93.38	85.24	18.68	17.49	9.26
	(-) → (-)	선철 및 강반성품	-36.58	-69.40	-84.52	-89.48	-90.51
		조미료 및 유지	-30.06	-62.81	-70.23	-71.58	-73.07

4. 정책적 시사점

본장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 경제 내에서 자원배분 변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관세율 정책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자원배분 변화는 곧 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관세율 정책의 변동은 자원배분 변화를 통해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총산출액, 부가가치, 수출입액, 무역특화지수, 수입의존도 등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일관된 기준에 의해 20년간의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로 정리한 것은 향후 관세율 정책의 유용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1980년 이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에서의 산출액과 부가가치 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990년대 들어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구조의 변화와 소득향상에 따른 생산비용 인상, 이로 인한 제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경제구조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과도한 팽창은 일본에서 보듯이 산업공동화와 함께 저상장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 하락이 두드러지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일본의 32.8%에 비해 27.4%로 낮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볼 때 단기적으로 관세율 정책은 특히 관세율 수준은 현재의 8% 중심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산업공동화와 함께 서비스업으로의 자원 이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관세율 인하는 이런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업은 대외개방이 아직 부진하여 경쟁과 효율성 증진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촉진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산업구조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은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섬유 및 가죽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업종은 하락하고 전기 및 전자기기 등 조립가공 업종이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소비재 업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980년의 12.87%에서 2000년에는 6.96%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조립가공 업종은 3.25%에서 11.97%로 상승하였다. 한편, 수출에서도 조립가공 제품의 수출비중이 1980년의 15.4%에서 2000년 48.5%로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재 제품의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39.7%에서 2000년에 13.3%로 감소하여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관세율 정책과 연관시켜 분석하면, 1997년에 추진한 섬유산업 등에 대한 관세율 인상정책은 이들 산업을 수입 측면에서는 보호하였을지 모르지만,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기보다는 이들 산업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평가된다.

취약산업에 대한 관세율 정책상의 지원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관세율 정책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일명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으로 정해진 관세율 수준에서 어느 한 산업을 지원함(관세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자원을 특정 산업에 묶어 두거나 혹은 해당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는 자원이 덜 배분되게 된다. 따라서 취약산업을 보호하여 이들 산업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도록 관세율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지원할지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사양산업 보호는 급격한 자유화의 폐해를 줄이고 정치적인 지지를 쉽게 얻기 때문에 편리한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한정된 자원과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에서는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사양산업에 대한 탄력관세, 반덤핑관세 혹은 관세환급 등의 정책수단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것은 아니며 이런 정책수단은 필수적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고부가가치 핵심 중간재 산업에 대한 선별적 육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지난 20여년간의 수입의존도 변화도 살펴보았다. 수입의존도로만 관세정책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수입의존도의 취약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 추이를 살펴보면 제한된 자원이 어느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한 현상이 바람직한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세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다.

수입의존도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조립가공 업종의 총수요 수입의존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는데, 이는 투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중간재 수입의존도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립가공 업종의 소비재 수입의존도는 다른 산업에 비해 낮다. 이는 조립가공 업종이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하면서 소비재에 대해서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밀기기는 수입의존도가 높는데, 특히 소비재 수입의존도는 증가하는 반면 중간재의 수입의존도는 감소하고, 투자재 수입의존도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밀기기의 산업경쟁력이 계속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수송장비의 소비재 수입의존도는 가장 낮는데, 이는 관세보다는 관세 이외의 장벽으로 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소비재 수입의존도도 낮은 편인데, 이는 비관세 장벽도 존재하지만 관세율 자체도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등의 높은 관세보호는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을 일부 가로막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조립가공 업종의 경우 최종재에 대한 경쟁력은 가지고 있지만 중간재의 육성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재에 대한 선별 작업을 통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에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중심관세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정밀기기 산업의 경우에는 최종재와 중간재 중 어느 부문에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은 기본적으로 최종재에 대한 보호를 통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런 정책적 기조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의 중간재에 대한 관세는 낮추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중간재 산업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선택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출에 따른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재 및 부품 등 중간재 산업의 육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무역특화지수 변화 특징은 소비재 업종의 무역특화지수는 점차 낮아지는 반면 조립가공 업종의 무역특화지수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조립가공 업종의 경우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이 밖에 20년간 무역특화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산업의 경쟁력의 방향이 나타난다.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와 화학섬유는 각각 1995년과 1990년을 기점으로 무역특화지수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었고, 유기화학기초제품, 일반기계제품인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와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는 무역특화지수가 음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산물, 비료 및 농약, 도자기 및 점토제품은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어 수입 특화쪽으로 완전히 전환되었고, 수산가공품, 빵, 과자 및 국수류는 아직 무역특화지수는 양(+)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뚜렷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선철 및 강반성품과 조미료 및 유지는 무역특화지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서도 계속적으로 수입비중이 증가하면서 무역특화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 추이는 향후 산업정책 및 관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산업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자동차, 선박, 일부 조립가공산업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런 산업에 대한 관세율 정책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사항산업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보다 세분화된 개별 산업별 연구를 통해 차별적인 관세율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겠다.

IV. 실효관세율 변화 추이

1. 실효관세율 개념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으로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국내생산(수입대체) 가격도 인상되어 생산이 증가한다. 그 결과 국산품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국내자원도 해당산업에 유입될 것이다. 그런데 명목관세율의 부과 혹은 인상은 제품의 상대가격과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만 완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를 포함한 수입중간재에 대하여 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완제품에 대한 생산비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완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효과는 약화된다. 그러므로 명목관세율로는 특정 산업에 관한 실질적 보호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서 자원의 움직임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 보호 정도와 자원이동 규모를 파악하려면 명목관세율보다는 중간재로 투입되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같이 감안한 실효관세율(effective rate of tariff protection)의 추정이 필요하다.

실효관세율의 목적은 전체적인 관세율 체계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데 있다. 즉, 실효관세율은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를 고려하여 완제품 가격에서 투입재 비용을 차감한 부가가치가 관세 부과를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수치화한 지수이다²⁰⁾.

20) 그러나 완제품의 소비와 중간재의 생산은 각각 이들 수입품에 부과된 명목관세율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완제품의 생산량은 이들 명목관세율과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실효관세율로는 국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별로 실효관세율의 변화를 추정하고자 한다. 자료는 가장 최근 한국은행이 2003년 10월에 발표한 2000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실효관세율을 추정한다. 관세율 자료는 2003년 HS 10단위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산업연관표의 특성상 자료가 매년 발표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한다.

가. 실효관세율 개념²¹⁾

본장에서 사용된 ‘실효관세율’이란 주어진 관세율의 구조체계로 인하여 특정 산출물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²²⁾. 따라서 실효관세율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려면 관세와 내국세 이외에도 수입 제한적인 비관세장벽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비관세장벽으로 국내가격이 관세 및 각종 수입비용을 포함한 국제가격과 상당한 격차를 보일 경우 관세율만으로는 실질적 보호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 이에 유정호 외(1993)에서는 비관세장벽을 감안한 실효관세율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변화를 살피고자 하므로 DDA 이후의 비관세장벽까지 고려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입이 제한되거나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분야의 경우 본 연구결과가 실질적 보호의 수준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제로 실효관세율의 개념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의 식 (1)과 같다.

내생산의 실제적인 증대 등 일반 균형적인 효과를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1) 본 내용은 장근호·이명현(1999)을 참고.

22) 유정호 외(1993) 참고.

$$z_j = \frac{V_j - V_j^*}{V_j^*} \quad (1)$$

여기서 V_j 는 j 산업에서의 관세부과 이후 제품 j 의 단위당 부가가치를 의미하는데 별표(*)로써 자유무역체제에서의 부가가치를 V_j^* 로 표시하면 실효관세율은 관세부과를 전후한 부가가치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식(1)에서 부가가치는 총생산액에서 중간재 비용과 감가상각비, 조세 등을 제외한 노동, 자본 등 기초 생산요소에 제공되는 보수의 총합을 의미한다. 실효관세율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산요소의 국제간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므로 결국 관세부과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대는 국내에 거주하는 각종 생산요소의 소유주에 대한 보수의 증가를 뜻한다.

실효관세율을 추정하기에 앞서 필요한 가정으로는 첫째, 관세의 부과를 전후하여 중간재 투입계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j 라는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중간재 i 의 비중 Q_{ij}/Q_j 는 모든 i 와 j 에 대하여 $Q_{ij}/Q_j = Q_{ij}^*/Q_j^*$ 이 성립한다²³⁾. 둘째, 국내경제를 소규모로 가정한다. 따라서 수출입제품의 가격은 세계시장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밖에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은 완전 경쟁재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실효관세율 z_j 를 명목관세율과 투입계수로 표시하면 우선 자유무역하에서의 단위당 부가가치 V_j^* 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V_j^* = \frac{1}{Q_j^*} (P_j^* Q_j^* - \sum_i P_i^* Q_{ij}^*) = P_j^* (1 - \sum_i \frac{P_i^*}{P_j^*} \frac{Q_{ij}^*}{Q_j^*})$$

23) 따라서 관세부과에 따른 상대가격의 변화, 환율변동 등에 의해 중간재 투입이 변할 경우 실효관세율에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 P_j^*(1 - \sum_i a_{ij}^*)$$

여기서 P^* 와 Q^* 는 자유무역 아래의 국내가격(CIF가격)과 생산량(투입량)을 의미한다. a_{ij}^* 는 원화로 환산된 중간재 투입계수로 j 라는 완제품 1원어치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중간재 i 의 투입액($P_i^*Q_{ij}^*/P_j^*Q_j^*$)을 의미한다. 재화 i 와 j 에 부과된 명목관세율을 각각 t_i 와 t_j 라고 한다면 관세가 부과된 이후의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V_j &= \frac{1}{Q_j} (P_j Q_j - \sum_i P_i Q_{ij}) = P_j (1 - \sum_i \frac{P_i}{P_j} \frac{Q_{ij}}{Q_j}) \\ &= P_j^*(1+t_j) [1 - \sum_i \frac{P_i^*(1+t_i)}{P_j^*(1+t_j)} \frac{Q_{ij}^*}{Q_j^*}] \\ &= P_j^* [1+t_j - \sum_i a_{ij}^*(1+t_i)] \end{aligned}$$

여기서 세계시장가격을 편리하게 1이라고 가정하면, 소규모경제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P=P^*(1+t)$ 가 된다. 이들 두 식을 식(1)에 대입하여 j 산업의 실효관세율 z_j 를 구하면 다음의 식과 같다.

$$z_j = \frac{P_j^* [1+t_j - \sum_i a_{ij}^*(1+t_i)]}{P_j^* (1 - \sum_i a_{ij}^*)} - 1 = \frac{t_j - \sum_i a_{ij}^* t_i}{1 - \sum_i a_{ij}^*}$$

위의 식은 실효관세율과 명목관세율 그리고 생산구조와의 관계를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중간재와 완제품의 관세율이 같다면 ($t_i=t_j$, 모든 i) 즉, 가공단계별로 균등관세율 체계가 성립한다면 실효

관세율은 명목관세율과 같고 둘째, 차등관세율 체계처럼 완제품의 관세율이 중간재 관세율보다 높으면 실효관세율은 완제품 관세율보다 더 높다. 셋째, 중간재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t_i=0$, 모든 i), 실효관세율 z_i 는 명목관세율 t_i 보다 크며 중간재 비중이 증가할수록(보호해야 할 부가가치가 감소할수록) 실효관세율도 상승한다. 넷째, 완제품 관세율이 중간재 관세율보다 큰 상황에서($t_j > t_i$), 중간재 비중이 증가하면 실효관세율도 같이 상승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실효관세율이 하락한다²⁴⁾.

앞선 논의에서는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재화가 교역재라는 전제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교역재의 생산에 소요되는 중간재가 교역재 뿐 아니라 비교역재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역재를 적절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Corden 방식과 Balassa 방식이 있다. Corden은 어떤 교역재에 적용되는 관세가 변화할 때 해당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비교역재의 부가가치도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실효관세율의 추정시 감안할 것을 주장하였고 반면 Balassa는 비교역재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교역재 가격의 상승만이 비교역재의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가정한다. 즉, Corden은 관세부과로 인하여 제품 j 의 부가가치가 변화하지만 j 재에 투입되는 비교역재 또한 정의상 시장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어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j 재의 관세부과로 인하여 그 가격이 변화한다고 본다. 본장에서는 수입가격과 무역장벽에 의하여 국내가격이 결정되는 교역재와 달리 비교역재의 가격탄력성은 제한되어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Corden식의 실효관세율을 추정한다.

유정호 외(1993)의 표현을 빌려 비교역재를 고려한 Corden 방식에 따른 관세부과 이후의 부가가치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의 식과 같다.

24) 이는 위의 식에서 보듯이 실효관세율이 상승하려면 분모가 증가하는 비율이 분자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begin{aligned}
V_j^c &= \frac{1}{Q_j} (Q_j P_j - \sum_i Q_{ij} P_i - \sum_{m=K+1}^{K+N} \sum_i \frac{Y_{im}}{Q_m} \cdot Q_{mj} \cdot P_i) \\
&= P_j - \sum_i \frac{Q_{ij}}{Q_j} P_i - \sum_m \sum_i \frac{Y_{im}}{Q_m} \cdot \frac{Q_{mi}}{Q_j} \cdot P_i \\
&= P_j [1 - \sum_i \frac{Q_{ij} P_i}{Q_j P_j} - \sum_m \sum_i \frac{Y_{im} P_i}{Q_m P_m} \cdot \frac{Q_{mi} P_m}{Q_j P_j}]
\end{aligned}$$

여기서 Y_{im}/Q_m 은 비교역재 m 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교역재 i 의 물리적 양이고, $Y_{im}/Q_m \cdot Q_{mj}$ 는 비교역재 m 을 통해 j 재 생산에 투입되는 교역재 i 의 양이다. 투입계수 $\frac{Q_{ij} P_i}{Q_j P_j} = a_{ij}$, $\frac{Y_{im} P_i}{Q_m P_m} = \gamma_{im}$, $\frac{Q_{mi} P_m}{Q_j P_j} = a_{mj}$ 라고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V_j^c = P_j (1 - \sum_i a_{ij} - \sum_m \sum_i \gamma_{im} a_{mj}) \quad (2)$$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유무역하에서의 부가가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V_j^{*c} &= \frac{1}{Q_j^*} (Q_j^* P_j^* - \sum_i Q_{ij}^* P_i^* - \sum_m \sum_i \frac{Y_{im}^*}{Q_m^*} Q_{mj}^* P_i^*) \\
&= P_j^* - \sum_i \frac{Q_{ij}^*}{Q_j^*} P_i^* - \sum_m \sum_i \frac{Y_{im}^*}{Q_m^*} \frac{Q_{mi}^*}{Q_j^*} \cdot P_i^* \\
&= P_j^* (1 - \sum_i \frac{Q_{ij}^* P_i^*}{Q_j^* P_j^*} - \sum_m \sum_i \frac{Y_{im}^*}{Q_m^*} \\
&\quad \cdot \frac{Q_{mi}^*}{Q_j^*} \cdot \frac{P_i^*}{P_j^*})
\end{aligned}$$

$$\text{여기서 } \frac{Q_{ij}^*}{Q_j^*} = \frac{Q_{ij}}{Q_j}, \quad \frac{Q_{mi}^*}{Q_j^*} = \frac{Q_{mi}}{Q_j}, \quad \frac{Q_{im}^*}{Q_m^*} = \frac{Q_{im}}{Q_m},$$

$\frac{Y_{im}^*}{Q_m^*} = \frac{Y_{im}}{Q_m}$ 라고 하면,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begin{aligned} V_j^{*c} &= P_j^* \left[1 - \sum_i \frac{Q_{ij}}{Q_j} \frac{P_i/(1+t_i)}{P_j/(1+t_j)} \right. \\ &\quad \left. - \sum_m \sum_i \frac{Y_{im}}{Q_m} \frac{P_i/(1+t_i) Q_{mi} P_m}{P_m Q_j P_j/(1+t_j)} \right] \\ &= P_j^* \left[1 - \sum_i a_{ij} \frac{1+t_j}{1+t_i} - \sum_m \sum_i \gamma_{im} a_{mj} \frac{1+t_j}{1+t_i} \right] \quad (3) \end{aligned}$$

이제 식(1)에 근거하여 관세부과 이후 부가가치인 식(2)와 자유무역에서의 부가가치 식(3)을 이용하여 Corden식의 실효관세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z_j^c &= \frac{V_j^c}{V_j^{*c}} - 1 \\ &= \frac{1 - \sum_i a_{ij} - \sum_m \sum_i r_{im} a_{mi}}{\frac{1}{1+t_j} - \sum_i a_{ij} \frac{1}{1+t_i} - \sum_m \sum_i r_{im} a_{mj} \frac{1}{1+t_i}} - 1 \end{aligned}$$

나. 실효관세율 추정의 문제점²⁵⁾

본장에서 추정되는 실효관세율은 실질 실효관세율보다 과대 또는 과소하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추정된 실효관세율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추정의 오차에 관한 원인을 논할 필요가 있다. 실효관세율이 과소

25) 본 내용은 장근호·이명현(1999)을 참고함.

또는 과대평가되는 원인에는 첫째로 품목별 관세율 통합에 따른 오차 (aggregation bias)가 있으며 둘째로 자유무역 아래서 중간투입계수를 관측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중간투입계수의 조정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의 한계상 모든 HS 10단위 품목의 실효관세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제 품목을 산업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통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S 10단위 품목인 생사는 산업연관표 기본분류에서는 견사로 분류되는데 견사에는 생사 이외에 다른 제 품도 있으므로 견사의 관세율은 평균적인 관세율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실효관세율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유무역 아래서 존재하는 중간투입계수 $a_{ij}^*(P_i^*Q_{ij}^*/P_j^*Q_j^*)$ 를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효관세율을 추정할 때 관세를 포함한 국내가격 기준의 투입계수 a_{ij} 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간재들 사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간재의 사용은 증가하고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수입중간재의 사용은 감소하며 이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 이후의 중간재 평균관세율($\sum a_{ij}t_i$)은 자유무역체제에서 나타나는 평균관세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게 되므로 추정치는 실질 실효관세율을 과대평가한다. 한편, 관측되는 투입계수는 중간재에서 노동 등 기초생산요소로의 대체를 반영하므로 중간재 비중은 하락하고 부가가치는 상승하여 추정치는 실질 실효관세율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추정된 실효관세율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은 중간재 투입계수 a_{ij} 가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따른 중간재 투입내역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만약 관세가 높은 물품의 비관세장벽이 클 경우 관측되는 실효관세율이 실질 실효관세율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유무역에서의 투입계수를 관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관세율을 추정하는 어떤 연구에서도 존재하는 근본적

인 제약조건들이다.

2. 실효관세율 변화 추이

가. 1990년 이전의 산업별 변화

1990년 이전의 실효보호율 분석은 기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아본다. 1990년을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1970~80년대에 비해 1990년 이후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0년대와 1990년대의 산업을 연계시키는 것이 어려운 작업으로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 분석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겠다.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관세율 자료에 있다.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관세율 자료의 기준도 1988년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표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여 수출입을 통한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BTN)를 도입한 후 관세협력이사회품목표(CCCN)로 전환하였고 1988년 이후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177개 이상의 국가에서 HS체계를 채택하여 세계상품 교역량의 약 98%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1990년 이전의 관세율 자료는 HS분류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서로 연계시키기는 작업에 문제가 많다.

1990년 이전의 실효보호율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현재보다 풍부하였다. 김광석·웨스트팔(1976)이 1960년대 말의 실효보호율을 추정하였고, 남중현(1981), 한국개발연구원(1982), 김광석·홍성덕(1982)은 1970년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홍성덕(1992), 최낙균 외(1993) 등은 1980년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1990년 초 관세인하예시제가 마무리되고 한편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중 홍성덕(1992)은 1978년부터 1990년까지의 주요산업별 실효보호율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첫째, 농림수산업을 포함한 제1차 산업의 평균 실효보호율이 계속 높아지고 또한 그 수준도 제조업의 평균 수준보다 항상 높다. 특히 미곡(벼 생산) 부문의 실효보호율이 매우 높아 이 부문의 영향이 크다.

둘째, 음료와 연초에 대한 실효보호율은 1975년부터 1990년까지 계속 음(-)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재료에 대한 보호율은 상당한 진폭변화를 보이나 일부 연도를 제외하면 평균 제조업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보호수준을 보였다.

셋째, 중간재 부문의 제1차 및 제2차 구분에 의한 실효보호율 구조는 항상 제2차 중간재의 실효보호율이 제1차 중간재보다 높았고, 제1차 중간재의 실효보호율은 항상 음(-)의 보호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명목보호율은 1988년까지 제1차 중간재가 제2차 중간재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1> 주요산업별 실효보호율

(단위: %)

	1975	1978	1980	1983	1985	1988	1990
제1차산업 계	33.6	86.1	80.4	94.6	95.9	123.4	174.5
농림수산업	36.6	91.8	96.4	100.2	104.1	141.0	197.1
광업 및 에너지	4.0	35.8	1.6	50.3	40.8	28.1	55.0
제조업 계	-4.6	11.2	21.9	19.6	10.7	0.1	5.8
가공식품	16.5	-12.4	-25.9	-45.3	-45.7	-46.5	-37.5
음료와 연초	-24.8	-32.2	-4.2	-1.8	-16.2	-36.3	-30.2
건설자재	-5.4	6.2	44.4	41.9	30.7	-2.0	33.9
제1중간재	-22.3	-15.2	-13.3	-18.7	-34.1	-22.7	-46.4
제2중간재	14.8	29.7	29.3	29.3	18.4	10.8	22.3
비내구소비재	-27.5	27.4	34.3	40.2	30.5	2.8	10.0
내구소비재	52.4	44.9	60.6	24.5	15.7	13.7	22.5
기계류	-0.3	9.4	65.2	41.0	24.5	13.8	37.4
수송장비	25.4	62.6	95.9	63.4	77.9	49.3	54.1
전 산업	9.5	33.5	36.1	35.8	26.5	13.5	22.9

자료: 홍성덕(1992), p. 27.

앞서 언급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는 <표 IV-2>에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홍성덕(1992)과는 달리 개별 연구 별로 이용한 관세율 등의 자료, 분석방법 등이 상이하여 수치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연도별로 연결하여 추세를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즉, 시계열적으로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수집된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표 IV-2> 1990년 이전의 명목보호율 및 실효보호율 대비표

(단위: %)

	명목보호율				실효보호율			
	1978	1982	1985	1988	1978	1982	1985	1988
농림수산물	47.1	66.3	13.1	3.8	67.5	74.3	13.4	7.5
광업 및 에너지	-30.9	0.3	8.9	6.4	-39.7	-1.7	9.7	-91.8
가공식품	32.0	19.8	46.0	1.2	-15.1	-48.8	53.4	2.6
음료 및 연초	20.9	12.2	39.5	31.9	31.4	15.0	82.4	18.6
건설자재	-10.3	26.3	17.2	10.6	-17.9	51.1	20.9	9.5
제1중간재	-4.9	14.6	23.5	7.3	-30.3	61.9	26.9	3.3
제2중간재	-2.5	19.2	18.3	7.2	2.9	39.6	20.5	12.9
비내구소비재	15.6	21.3	18.4	9.5	53.3	42.4	23.1	4.5
내구소비재	41.2	26.1	5.2	55.3	156.9	52.5	5.5	-38.7
기계	15.5	22.6	14.4	6.8	39.1	31.3	17.0	12.8
수송장비	20.7	33.0	19.0	3.8	109.9	123.9	22.2	5.1
전 산업상품	12.7	31.7	15.1	7.2	26.0	48.9	17.1	1.5
1차산업상품	34.3	60.5	10.2	-	49.4	66.7	10.8	-
제조업제품	6.6	19.4	17.4	-	7.5	28.2	20.2	-

주: 수치는 남종현(1981), 한국개발연구원(1982), 유경득(1989), 최낙균·신현수(1993)를 참고함.

자료: 최낙균 외(1993) p. 38.

나. 1990년 이후의 산업별 변화

1) 명목 및 실효관세율 분포 비교

1990년대 자료를 이용하여 실효관세율을 분석한 기존 연구로는 장

근호(1997), 장근호·이명현(1999)이 대표적이다. 장근호(1997)는 1994년을 기준으로 실효관세율을 분석하였고, 장근호·이명현(1999)에서는 1998년을 기준으로 실효관세율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시계열화 작업을 통해 실효관세율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고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실효관세율 변화를 추정하여 가장 최근까지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실효관세율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²⁶⁾²⁷⁾.

전체적으로 연도별 변화의 흐름을 보기위해 구간별로 명목관세율(실적관세율)²⁸⁾과 실효관세율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단순평균 기준으로 1990년에 명목관세율은 10~12%의 구간에 가장 많은 산업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각각 8~

26) 실효관세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중간재 투입계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연관표가 발표된 1990년, 1995년, 2000년의 실효관세율과 2000년의 중간재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2003년 실효관세율을 계산하였다. 이는 2003년에도 중간재 투입계수는 2000년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 가정이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2003년의 중간재 투입계수를 알 수 없고, 한국은행의 2005년 산업연관표는 2008년말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03년의 실효관세율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27) 본 분석은 경상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다.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사용할 경우 물가변화, 환율변화 등이 분석에서 제외되고 기술구조 변화 등이 포착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의도는 기술구조 혹은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실효관세율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환율, 원자재가격 등이 다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실효관세율을 보고자 하였다. 즉, 당해 연도의 실효관세율과 당해 연도의 명목(실적)관세율을 비교하고 이런 관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접속불변표를 이용한 분석도 의의가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분야로 본고의 목적에는 벗어난다. 이를 지적해 준 익명의 평가자에게 감사를 전한다.

28) 제IV장에서 명목관세율은 실적관세율을 의미한다. 또한 본고에서 실적관세율은 수입액을 관세징수액으로 나눈 값으로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와 관세감면이 반영된 관세율이다. 단, 관세환급액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실적관세율은 기본세율, 실행세율, 탄력세율 등 여러 가지 관세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적용된 세율로 관세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관세율 중 하나이다.

10% 구간과 12~14%의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이는 관세인하예시제의 실시로 우리나라가 균등관세율 체계를 지향한 결과이며, 1990년 당시의 중심세율은 13%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총 54개 산업 중 39개 산업의 명목관세율이 이 구간에 분포되어 있다. 실효관세율 분포는 35개 산업이 10% 이상의 구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15개 산업은 8% 이하의 실효관세율을 나타내 명목보호 수준 이하의 보호율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음(-)의 보호수준을 보인 산업도 7개 산업이 있다. 이들 산업은 주로 농림수산업, 광산업, 음식료업에 속해 있었고, 인쇄, 출판 및 복제, 그리고 기타 수송장비에서 음(-)의 보호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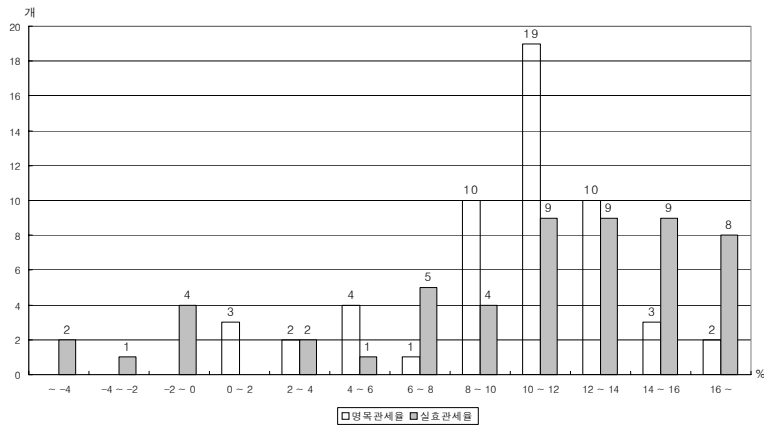
1995년을 기준으로 명목관세율 분포를 보면 6~8%의 구간에 58개 산업 중 33개의 산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994년을 기점으로 관세인하예시제가 매듭지어지면서 균등관세율 체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관세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실효관세율 분포도 6~8%의 구간에 23개의 산업이 분포되어 역시 가장 많은 산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 이상의 실효관세율을 보인 산업이 1990년 35개 산업에서 1995년에는 11개 산업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또한 8% 이하의 실효관세율을 나타낸 산업도 18개로 1990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고, 음(-)의 보호수준을 보인 산업도 7개 산업으로 1990년과 동일하였다. 1990년과 유사하게 이들 산업은 주로 농림수산업, 광산업, 음식료업에 속해 있었고, 이 밖에 선박, 기타 수송장비 등 수송장비 산업에서 음(-)의 보호수준을 보였다.

2000년에는 6~8%의 구간에 25개의 산업이 분포되어 있어 199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3개 산업이 8% 이상의 구간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과 관련하여 1997년 기본관세율을 8%에서 10%, 13%, 16%로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산업은 명목관세율 수준이 낮아진 산업도 있다. 이런 결과 실효관세율 분포에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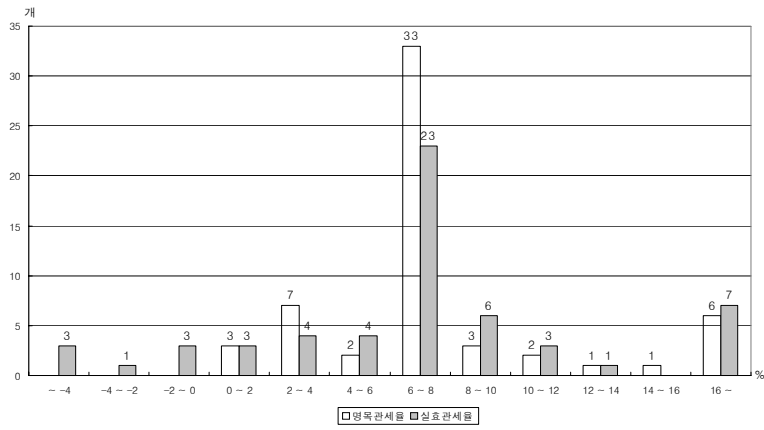
을 미쳐 실효관세율 6~8%의 구간에 12개의 산업만이 분포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일부 산업은 보호율이 높아졌지만 그보다 많은 산업의 보호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음(-)의 보호수준을 보인 산업도 여전히 8개 산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주로 농산물에 대한 높은 보호로 음식료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인쇄, 출판 및 복제와 새롭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서 ITA 협정의 결과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선박에서도 여전히 음(-)의 보호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00년의 명목관세율 분포는 유사하다. 6~8%의 구간에 22개로 가장 많은 수의 산업이 분포되어 있다. 3개 산업이 0~4% 구간으로 이동하여 관세율이 낮아졌다. 실효관세율 분포에도 큰 변화가 없다. 다만, 10% 이상의 구간에서 1개의 산업이 감소하였고, 6% 이하의 구간에서 2개의 산업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음(-)의 보호수준을 보인 산업이 7개로 나타났다.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와 농산물 보호로 광산업과 음식료업에서 주로 이런 역관세 현상이 나타났고 제조업 중에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계속해서 ITA 협정 결과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났으며 새롭게 가구에서도 역관세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IV-1] 단순평균(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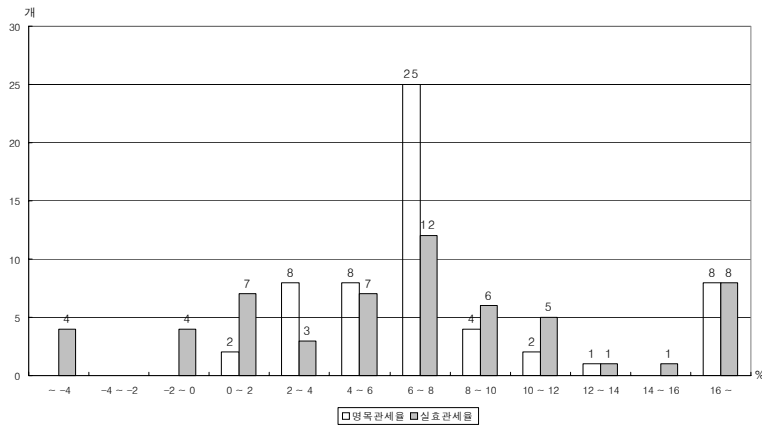


[그림 IV-2] 단순평균(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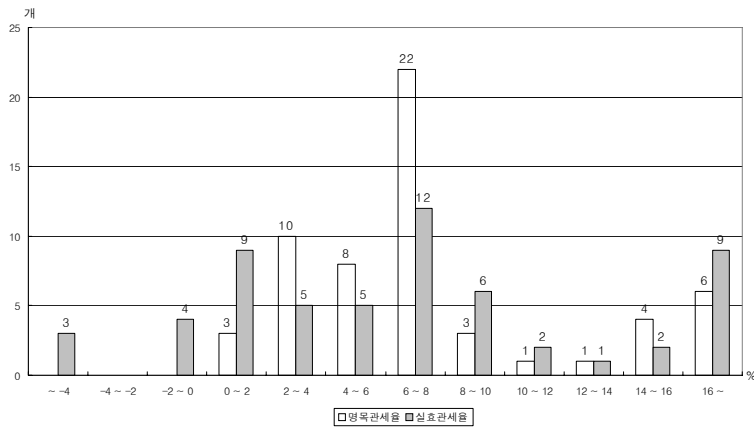


IV. 실효관세율 변화 추이 97

[그림 IV-3] 단순평균(2000년)



[그림 IV-4] 단순평균(2003년)



다음에는 가중평균한 관세율 분포를 비교해 보자. 단순평균세율은 관세율을 품목수로 나눈 수치로 세율이 높아 수입이 되지 않거나 혹은 수입이 미미한 품목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수입가중 평균세율은 실제

수입동향에 따라 수입품의 상대적 중요성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즉, 수입이 많은 품목의 세율이 그만큼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변화를 고려할 때 유용할 수 있다.

우선 1990년의 명목관세율 분포를 보면, 단순평균과는 달리 뚜렷한 중심구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8~10%의 구간과 10~12%의 구간에 각각 11개씩의 산업이 분포되어 있었다. 10% 이상의 구간에도 10개 산업이 있어 가중평균으로 본 명목관세율 분포는 단순평균에 비해 전체적인 관세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의 관세율이 더 낮게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효관세율은 단순평균과 비교했을 때 16% 이상의 높은 보호를 향유하는 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 이하의 보호수준을 보이는 산업은 15개로 단순평균 기준 9개 산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의 보호수준을 보인 산업도 10개로 더 증가하였다. 이들 산업은 단순평균 실효관세율에서 보았듯이 주로 농림수산업, 광산업, 음식료업, 인쇄, 출판 및 복제, 그리고 기타 수송장비에서 음(-)의 보호수준을 보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석탄제품, 비료 및 농약, 선철 및 조강 등에서도 음(-)의 보호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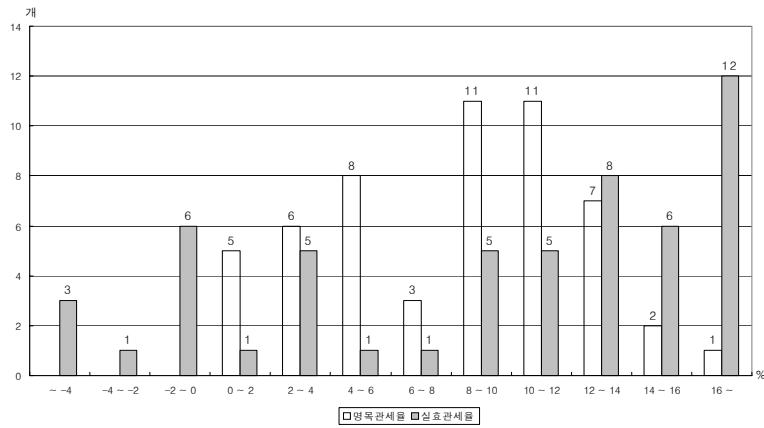
1990년에는 전체적인 관세율 분포가 넓게 퍼져 있었지만 1995년에는 이보다 중심세율을 중심으로 모이는 분포를 보였다. 명목관세율 분포도 6~8%의 구간에 21개의 산업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4~6% 구간에 12개의 산업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평균과 비교해서 수입이 많은 품목의 명목관세율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효관세율도 크게 낮아졌다. 10% 이상의 보호수준을 보인 산업이 1990년 31개 산업에서 1995년에는 11개 산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단순평균 기준보다는 많은 산업이지만 관세인하예시제로 우리나라 산업의 보호수준이 크게 낮아졌고, 특히 높은 보호를 받던 산업들에 큰 타격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음(-)의 보호수준을 보인 산업은 5개 산업으로 1990년보다 감소하였다. 1995년의 단순평균 실효관세율 분석과 유

사하게 이들 산업은 주로 광산업, 음식료업, 선박, 기타 수송장비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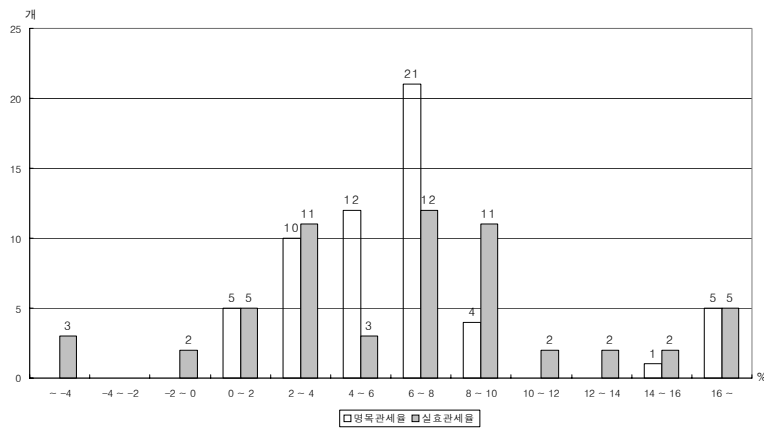
2000년의 가중평균 명목관세율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낮아졌다. 특히 0~2%의 미소관세구간의 산업수가 1995년 5개에서 2000년에는 10개로 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효관세율 분포를 보면, 10% 이상의 보호수준을 받는 산업이 1995년 11개에서 2000년에는 15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음(-)의 보호수준을 보인 산업도 10개로 오히려 증가하여 실효관세율 분포는 더 넓어지게 되었다. 이들 산업을 살펴보면, 광산업과 주로 농산물에 대한 높은 보호로 인한 음식료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인쇄, 출판 및 복제와 단순평균 실효관세율 분석과 달리 새롭게 전자기기 부분품에서 ITA 협정의 결과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선철 및 조강, 선박과 기타 수송장비에서도 여전히 음(-)의 보호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3년과 2000년의 명목관세율 분포는 거의 유사하며, 실효관세율 분포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음(-)의 보호수준을 보인 산업은 여전히 10개로 나타났지만 -4% 이하의 산업이 3개에서 1개로 감소하면서 -2~0% 구간의 산업 수가 2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업과 음식료업에서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고, 인쇄, 출판 및 복제, 전자기기 부분품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서 ITA 협정의 결과로 양 산업 모두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선철 및 조강, 선박과 기타 수송장비에서도 여전히 음(-)의 보호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5] 가중평균(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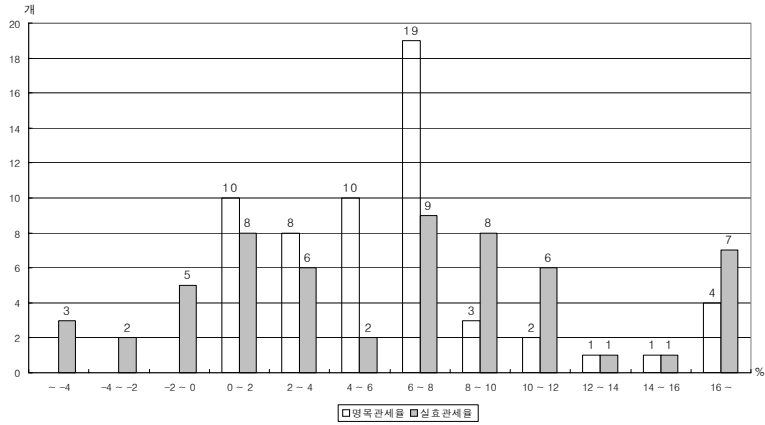


[그림 IV-6] 가중평균(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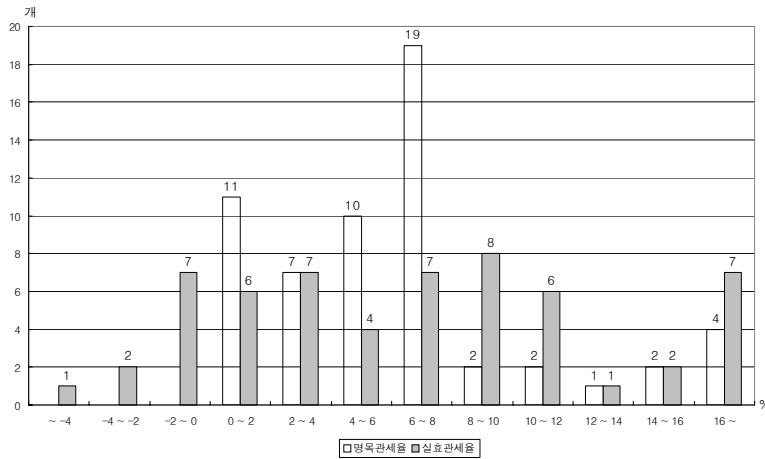


IV. 실효관세율 변화 추이 101

[그림 IV-7] 가중평균(2000년)



[그림 IV-8] 가중평균(2003년)



2) 산업별 변화 추이

전체적인 산업별 명목세율 및 실효관세율 변화추이의 특징은 첫째, 농림수산업과 음식료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지난 10여년간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업부문의 보호로 인해 일부 음식료업에서는 명목세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재로 사용하는 농림수산품의 관세율이 더 높아서 음(-)의 실효관세율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1990년대 제1, 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 이후 관세율이 1990년대 중반 인하된 이후 8%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세율 구조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의 산업을 들 수 있다.

반면, 셋째,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특히 ITA 협정 결과로 인해 목재 및 종이제품 산업,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급속한 명목세율 인하와 음(-)의 실효관세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8% 중심관세율 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국제협정이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수출을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의 역관세 현상 발생은 중간재 산업과 최종재 산업 중 어느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향후 기본관세율 개편이 실시될 때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의가 요구된다.

가) 농림수산업, 음식료업

우리나라는 농림수산업과 음식료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이 두 산업은 우리나라가 유지하는 8% 중심세율에서 거의 예외로 이보다 높은 명목관세율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실효관세율 수준도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농림수산품에 속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물 모두 지난 10년간 실효관세율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율인하예시제가 끝난

1999년 이후부터 농림수산물에 대하여 탄력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많아졌고, 이 때문에 농림수산물의 단순평균 명목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실효관세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관세율인하예시제 이후 농림수산물의 보호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료업은 농림수산업과 함께 농업보호라는 측면에서 고관세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정곡 및 제분, 육류 및 낙농품,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 음료품 등이 2003년 기준으로 15% 내지 30%대의 단순평균 명목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곡 및 제분의 경우는 169.59%의 실적관세율을 보이고 있어 최상위의 고관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물이 지난 10여년간 관세율이 증가되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실효관세율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식료품의 제조에 이용되는 원자재인 농림수산물의 관세율이 높은 관계로 역관세 현상이 때로는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농림수산물의 관세율보다도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기도 한다.

육류 및 낙농품의 경우 단순평균 명목관세율은 1990년 13.63%에서 2003년 29.38%로 15.75%p가 증가하였으나 단순평균 실효관세율은 23.71%에서 199.0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수산가공품의 경우는 단순평균 명목관세율은 16%대에서 실효관세율은 19~20%에서 10여년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곡 및 제분은 단순평균 명목관세율도 10여년간 급격하게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중간재인 농산물 보호로 역관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에는 단순평균 명목관세율이 7.43%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169.5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단순평균 실효관세율은 1990년에 -40.44%였다가 1995년에는 -256.43%으로 감소하였다가, 2003년에는 -139.19%를 나타내 역관세가 상당히 크게 존재하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중평균 명목관세율은 단순평균과 달리 관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에서도 1990년과

1995년에는 역관세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0년과 2003년에는 역관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빵·과자 및 국수류는 단순평균 명목관세율에 있어서는 1990년 12.28%를 나타낸 이후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약 9.5%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효관세율은 2000년도에는 -8.40%를, 2003년도에는 -9.27%를 나타냄으로써 역관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2000년도 무렵에 정곡 및 제분의 관세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분 등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빵·과자 및 국수류 산업에 투입되는 정곡 및 제분의 원자재 관세율의 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중평균관세율의 경우는 단순평균과는 달리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관세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의 명목관세율은 1995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나 실효관세율은 1995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음료품의 경우도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과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배합사료의 명목관세율은 다른 식료품 산업군의 품목보다 관세율이 낮게 나타난다. 1995년에는 4.63%, 2000년에는 5.07%, 2003년에는 4.83%로 원자재로 투입되는 품목이므로 관세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에서는 역관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담배는 담배협상 영향기간의 종료 후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을 때 명목관세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003년 32.59%). 따라서 관세부과 이전에는 당연히 역관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순평균 실효관세율이 관세부과 전인 1995년에는 -10.72%에서 부과 후인 2003년에는 37.77%로 급반전을 하고 있다. 이는 한·미간의 담배협상 결과가 우리나라 담배산업에 관세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가중평균관세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나) 광산업

광산품의 경우는 10여년간 커다란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유 및 천연가스의 경우 원유는 모든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이므로 할당관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단순 및 가중평균 명목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실효관세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속광석은 실효관세율이 단순평균기준으로 1990년에는 -2.16%를 나타내 역관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년 후에는 -0.68%로 역관세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중평균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속광석의 경우 원유와는 달리 관세율인하예시제 초기부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역관세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섬유 및 가죽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군은 1990년에 단순평균기준으로 관세율이 8%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1995년에는 8%보다 낮거나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 이후에는 1%p 내지 2%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관세율의 경우는 섬유직물, 기타섬유제품이 1990년에 17~18% 수준이었다가 1995년에는 거의 10%p 정도 하락하였다가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류 및 장신품은 1995년에 7.66%까지 실효관세율이 하락하였다가 2000년, 2003년 16%대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가중평균명목 및 실효관세율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라) 목재 및 종이제품, 인쇄, 출판, 및 복제

목재 및 종이제품도 지난 10여년간 실효관세율 및 명목관세율이 서

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결과 종이 등에 대해서 10년에 걸쳐 무세화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에서도 음(-)의 값이 나타나고 있다.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으로 인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부문이 많다. 따라서 관세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가중평균 명목관세율이 모두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더 낮아져 거의 2%대에 머무르고 있고, 실효관세율의 경우도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석유 및 석탄제품

석탄제품과 석유제품 모두 단순평균관세율의 경우 1995년 이후에는 관세율이 서서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는 2003년에 단순평균 실효관세율이 21.07%로 보호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은 1990년에는 14.87%(단순: 11.16%), 1995년에는 3.87%(단순: 16.25%), 2000년에는 -3.14%(단순: 15.62%), 2003년에는 0.57%(단순: 21.0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율 차이가 크지 않고 또한 나프타,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제품에서 원유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중평균관세율은 낮게 나타나고, 2000년에는 역관세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탄력관세 부과로 실효관세율이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바)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제품

단순평균 명목관세율 및 실효관세율은 1995년 이후 대체적으로 7~

8%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가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되면서 그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의약품 및 화장품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가중평균관세율을 살펴보면 비료 및 농약제품은 명목관세율에 있어서 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실효관세율은 1990년에 -1.92%의 역관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는 1.32%로 역관세가 해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농약원자재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결과라고 보인다.

비금속광물 제품은 화학제품과 유사하게 6~8% 수준의 명목세율을 보이고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실효관세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의 균등관세율 체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효관세율 수준이 명목세율보다 약간 높은 이유는 중간재 비중이 화학제품에 비해 약간 낮아 보호해야 할 부가가치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사)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선철 및 조강은 단순평균관세율 기준으로 10여년간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이 2003년 들어 -1.40%의 역관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철 부문에서는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조강의 실효관세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기인한다. 이 부문은 철광석을 이용해서 선철을 제조하고 선철을 중간재로 조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순환고리에서 중간재에 대해 하나씩 관세를 낮출 경우 후방산업의 실효관세율은 증가하게 된다. 즉, 철광석과 선철의 관세율을 무세화할 경우 조강의 실효관세율이 개선됨을 의미한다.

이들보다 가공도가 높은 철강1차 제품은 상당 품목에서 중간재 세율은 낮으나 그 비중이 높아 실효관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3년에는 단순평균관세율 기준으로 2000년까지 7~9%(가중평균: 5~6%)의 세율을 유지하다가 2003년에 2.41%(가중평균: 1.90%)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탄력관세 적용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실효관세율도 2000년 11%(가중평균: 11%) 수준에서 2003년에 1.52%(가중평균: 1.94%)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금속제품의 단순평균 명목관세율, 가중평균 관세율기준 모두 1990년도에 가장 높았다가 1995년 이후 약 6~7%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심세율 근처에 모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기계의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와 특수 목적용 기계 및 장비의 경우에도 금속제품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수 목적용 기계에는 반도체 제조용 기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문은 ITA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분야로 이로 인해 명목세율 및 실효관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전자기기 부분품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제품은 ITA협정 등으로 무관세화된 품목이 매우 많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는 단순평균 명목관세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단순평균 실효관세율에서는 2003년에 역관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의 경우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부분품에서도 역관세 현상이 있다. 이는 전기 및 전자기기의 최종재에 대해서는 무세가 이루어지면 중간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전자기기 부분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역관세 문제는 중간재 산업 육성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며 DDA 협상 이후 기본관세율체계 개편이 논의될 경우 많은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정밀기기의 명목세율은 단순평균, 가중평균 모두 1990년도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5~6%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실효관세율도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 수송기기

자동차 부문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관세율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실효관세율이 명목세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박과 기타 수송장비 부문은 명목세율이 매우 낮으며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 음(-)의 보호수준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선박은 대부분이 무관세가 적용되고 특히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문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평균 명목세율보다는 가중평균 명목세율이 더 낮고 실효관세율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선박 부문은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무역특화지수에서 양(+)의 수준을 보이고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가지고 오는 경쟁력 있는 부문이지만, 최종재에 대한 무관세로 실효관세율이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선박의 단순평균 실효관세율은 1995년에 -2.05%에서 점차 개선되어 2003년에는 1.36%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에서는 역관세는 계속 나타나지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가구 산업의 단순평균 및 가중평균 명목세율은 1990년도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다소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국제협정에 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단순평균 명목세율기준으로는 1990년 11.32%(가중평균: 10.51%)에서 2003년 2.95%(가중평균: 4.02%)로 하락하였으며, 단순평균 실효관세율 기준으로는 11.13%(9.69%)에서 -0.49%(1.89%)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타 제조업의 경우는 단순평균 명목관세율, 가중평균 관세율기준 모두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1990년도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완구 등이 이에 포함되어 그 관세율이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 낮아졌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아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IV. 실효관세율 변화 추이 111

<표 IV-3> 산업별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단순평균 기준)

(단위: %)

	명목관세율				실효관세율			
	1990	1995	2000	2003	1990	1995	2000	2003
1. 농림수산물								
1. 작물	15.10	18.38	28.71	39.21	15.77	20.05	32.94	46.13
2. 축산	10.65	6.65	6.68	7.22	-0.97	7.40	5.12	5.75
3. 임산물	8.21	10.05	10.96	14.89	7.95	10.15	11.13	15.46
4. 수산물	12.47	15.65	16.52	16.24	13.49	18.57	21.05	20.59
2. 광산물								
5. 석탄	0.80	1.00	1.00	0.78	-1.74	-0.98	0.14	-0.10
6. 원유 및 천연가스	4.71	2.27	3.74	2.69	4.71	2.27	3.74	2.69
7. 금속광석	1.00	1.00	0.89	0.69	-2.16	-0.45	-0.68	-0.88
8. 비금속광물	5.03	3.14	3.13	3.11	3.81	2.34	2.36	2.32
3. 음식료품								
9. 육류 및 낙농품	13.63	21.45	28.74	29.38	23.71	73.27	192.34	199.04
10. 수산가공품	15.33	16.72	16.45	16.74	19.90	20.98	18.87	20.65
11. 정곡 및 제분	7.43	36.97	142.94	169.59	-40.44	-256.43	-137.76	-139.19
12. 제당 및 전분	10.14	13.85	23.03	17.90	9.97	13.60	26.34	14.36
13. 빵, 과자 및 국수류	12.28	9.92	9.69	9.54	12.31	1.47	-8.40	-9.27
14. 조미료 및 유지	-	11.39	12.13	13.44	-	6.08	1.35	1.35
15.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	20.36	28.82	27.44	27.93	34.06	52.22	32.27	27.67
16. 음료품	31.32	27.14	16.51	16.14	57.82	43.72	16.88	16.18
17. 배합사료	-	4.63	5.07	4.83	-	-11.16	-11.22	-14.36
18. 담배	0.00	1.34	5.30	32.59	-12.12	-10.72	-4.74	37.77
4. 섬유 및 가죽제품								
19. 섬유사	9.53	7.04	7.29	7.18	6.45	0.67	2.87	1.28
20. 섬유직물	12.57	8.39	9.58	9.54	17.01	9.38	11.66	11.70
21. 의류 및 장신품	13.56	7.84	11.88	11.96	18.97	7.66	16.06	16.46
22. 기타 섬유제품	14.06	7.84	9.56	9.51	17.85	7.56	10.96	11.01
23. 가죽제품 및 모피	11.04	6.74	7.53	7.67	9.95	2.45	1.74	2.03
5. 목재 및 종이제품								
24. 목재 및 나무제품	11.58	7.69	7.00	7.03	15.77	6.27	4.76	3.26
25. 펄프 및 종이	11.13	7.03	6.92	2.66	11.32	6.92	6.70	0.93
6. 인쇄, 출판 및 복제								
26. 인쇄, 출판 및 복제	3.70	3.05	2.72	2.50	-1.88	0.20	-0.63	0.99
7. 석유 및 석탄제품								
27. 석탄제품	9.14	3.85	4.43	4.16	36.11	10.11	13.91	13.44
28. 석유제품	3.90	6.49	6.41	6.60	11.16	16.25	15.62	21.07

<표 IV-3>의 계속

(단위: %)

	명목관세율				실효관세율			
	1990	1995	2000	2003	1990	1995	2000	2003
8. 화학제품								
29. 유기화학 기초제품	11.14	7.29	7.35	6.91	12.78	7.67	8.37	7.28
30. 무기화학 기초제품	12.21	6.96	7.22	6.47	14.42	7.51	7.82	6.75
3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1.19	7.68	7.84	7.77	14.44	8.16	8.66	9.25
32. 화학섬유	9.65	7.40	7.19	7.12	7.03	7.59	6.85	7.58
33. 비료 및 농약	10.36	6.82	6.84	6.69	9.71	6.46	6.46	6.52
34. 의약품 및 화장품	12.42	7.25	5.82	5.45	12.47	6.57	4.22	3.77
35. 기타 화학제품	11.84	7.77	7.52	7.37	13.03	8.27	7.55	7.62
36. 플라스틱제품	12.11	7.55	7.70	7.53	12.65	7.45	7.74	7.63
37. 고무제품	11.36	6.91	7.29	7.38	10.35	4.54	5.48	5.32
9. 비금속광물제품								
38. 유리제품	13.08	8.32	7.75	7.71	15.04	9.02	8.07	8.18
39. 도자기 및 점토제품	-	7.56	7.52	7.67	-	8.32	8.39	8.92
40.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9.62	6.55	6.17	6.57	11.60	7.89	6.97	7.82
41.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1.81	6.82	6.95	7.02	14.88	7.91	8.20	8.47
10. 제1차 금속제품								
42. 선철 및 조강	4.16	3.96	3.07	2.29	2.93	3.74	1.92	0.46
43. 철강1차제품	9.00	7.30	7.07	2.41	15.74	11.23	11.50	1.52
44.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8.44	5.39	5.50	5.39	11.48	5.87	6.52	6.48
11. 금속제품								
45. 금속제품	11.35	7.03	7.30	6.85	13.74	6.85	7.56	9.35
12. 일반기계								
46.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9.44	6.38	6.33	5.97	8.91	5.83	5.94	6.61
47.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10.23	6.76	6.01	5.35	10.63	6.54	5.29	5.33
13. 전기 및 전자기기								
48. 전기기계 및 장치	10.14	6.44	6.27	6.17	10.46	6.19	6.30	6.69
49. 전자기기 부분품	8.84	6.38	2.81	2.60	7.18	6.02	1.03	0.91
50.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8.05	6.43	5.50	4.15	6.37	6.16	7.48	4.56
5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0.58	6.86	2.09	1.53	12.04	7.40	-0.97	-2.07
52. 가정용 전기기기	11.79	6.40	8.05	7.40	15.55	5.81	10.38	9.84
14. 정밀기기								
53. 정밀기기	10.23	6.59	5.85	5.46	10.14	6.33	6.20	5.80
15. 수송장비								
54. 자동차	12.78	6.52	6.29	6.61	14.75	6.04	5.73	7.52
55. 선박	-	2.38	2.99	3.38	-	-2.05	-0.54	1.36
56. 기타 수송장비	5.07	3.27	3.68	3.97	-0.51	-0.04	0.45	1.73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57. 가구	11.32	7.78	4.16	2.95	11.13	7.92	1.16	-0.49
58. 기타 제조업제품	11.69	7.83	7.86	7.29	12.38	8.15	8.39	7.66

IV. 실효관세율 변화 추이 113

<표 IV-4> 산업별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기중평균기준)

(단위: %)

	명목관세율				실효관세율			
	1990	1995	2000	2003	1990	1995	2000	2003
1. 농림수산물								
1. 작물	4.00	5.98	8.84	9.40	3.79	6.24	9.70	10.39
2. 축산	5.88	4.18	3.76	4.93	-2.86	1.96	0.80	4.01
3. 임산물	2.45	2.39	1.14	1.42	2.12	2.18	0.74	1.06
4. 수산물	10.17	19.05	25.54	22.92	11.64	24.13	37.33	32.96
2. 광산물								
5. 석탄	1.00	1.00	1.00	0.58	-0.95	-0.59	0.39	-0.04
6. 원유 및 천연가스	4.88	2.32	3.98	2.76	4.88	2.32	3.98	2.76
7. 금속광석	1.00	1.00	0.72	0.26	-1.63	-0.13	-0.39	-0.90
8. 비금속광물	3.53	2.89	2.29	2.58	2.46	2.29	1.84	2.20
3. 음식료품								
9. 육류 및 낙농품	8.07	20.24	23.82	27.42	14.20	81.08	163.44	216.10
10. 수산가공품	9.88	15.20	14.45	14.07	9.59	13.71	-0.07	2.40
11. 정곡 및 제분	5.26	6.09	5.68	4.67	22.08	7.46	-14.47	-22.58
12. 제당 및 전분	3.55	4.53	4.89	6.81	2.66	3.07	3.12	6.26
13. 빵, 과자 및 국수류	14.05	16.58	13.55	12.36	24.87	31.75	22.14	19.13
14. 조미료 및 유지	-	5.37	6.43	6.57	-	2.12	3.12	3.05
15.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	13.13	29.18	26.35	24.37	28.34	82.14	56.73	49.87
16. 음료품	37.29	27.16	16.00	15.99	89.19	49.21	21.66	22.00
17. 배합사료	-	5.04	5.06	4.99	-	2.67	1.88	1.45
18. 담배	0.03	0.00	0.01	28.26	-6.63	-6.06	-5.61	50.87
4. 섬유 및 가죽제품								
19. 섬유사	9.32	5.26	7.10	6.96	12.71	3.90	7.39	7.16
20. 섬유직물	12.66	9.82	10.68	10.40	18.36	14.22	14.90	14.57
21. 의류 및 장신품	13.24	7.91	11.97	11.64	19.13	7.69	16.11	15.55
22. 기타 섬유제품	14.89	8.32	8.76	8.81	21.19	8.85	9.32	9.77
23. 가죽제품 및 모피	10.04	5.87	6.56	7.73	10.37	1.76	1.67	3.18
5. 목재 및 종이제품								
24. 목재 및 나무제품	12.40	8.29	7.50	7.91	27.59	12.57	11.55	12.32
25. 펄프 및 종이	4.70	3.92	3.08	1.45	3.14	3.19	2.01	-0.16
6. 인쇄, 출판 및 복제								
26. 인쇄, 출판 및 복제	2.26	2.20	1.32	0.80	-0.98	0.45	-0.68	-0.74
7. 석유 및 석탄제품								
27. 석탄제품	3.27	5.00	5.00	5.00	-5.49	15.39	17.35	18.95
28. 석유제품	4.70	3.02	2.34	2.37	14.87	3.87	-3.14	0.57

<표 IV-4>의 계속

(단위: %)

	명목관세율				실효관세율			
	1990	1995	2000	2003	1990	1995	2000	2003
8. 화학제품								
29. 유기화학 기초제품	8.61	6.67	6.58	5.80	12.57	8.69	11.49	9.64
30. 무기화학 기초제품	11.63	5.17	5.19	4.94	17.92	5.31	5.64	5.35
3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9.05	7.07	7.73	7.70	12.43	7.86	10.35	11.78
32. 화학섬유	9.15	6.48	6.51	6.13	10.31	6.34	6.66	6.92
33. 비료 및 농약	4.62	3.38	3.47	3.19	-1.92	0.92	1.49	1.32
34. 의약품 및 화장품	12.09	7.18	7.13	6.89	13.84	7.65	7.63	7.45
35. 기타 화학제품	11.27	6.79	6.45	6.26	14.40	7.38	6.77	6.83
36. 플라스틱제품	11.63	7.43	7.69	7.60	12.99	8.22	8.68	8.66
37. 고무제품	11.79	7.12	7.37	7.70	14.51	7.72	7.85	8.62
9. 비금속광물제품								
38. 유리제품	12.88	8.17	7.75	7.34	16.59	9.55	9.02	8.51
39. 도자기 및 점토제품	-	7.66	7.76	7.79	-	9.31	10.37	10.54
40.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1.58	5.31	5.70	5.39	-0.59	6.23	7.12	6.68
41.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1.70	7.11	7.74	7.76	16.66	9.46	11.88	11.92
10. 제1차 금속제품								
42. 선철 및 조강	2.04	2.65	1.50	1.19	-1.18	1.07	-0.98	-1.40
43. 철강1차제품	6.76	6.60	5.57	1.90	13.20	11.46	10.20	1.94
44.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6.36	3.83	3.59	3.43	8.35	3.96	4.13	4.08
11. 금속제품								
45. 금속제품	10.48	6.39	7.10	6.49	14.42	6.57	8.90	9.86
12. 일반기계								
46.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9.12	6.17	6.86	6.71	10.05	6.17	8.13	9.09
47.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8.47	5.70	3.86	3.92	8.54	5.12	2.07	3.27
13. 전기 및 전자기기								
48. 전기기계 및 장치	9.76	6.46	6.04	4.97	12.00	7.41	7.18	5.65
49. 전자기기 부분품	4.56	3.98	0.82	0.72	0.84	3.08	-1.28	-1.23
50.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6.57	6.85	4.56	2.75	6.71	9.86	7.61	3.58
5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0.61	6.71	1.61	0.46	17.23	10.56	0.90	-1.92
52. 가정용 전기기기	8.28	7.54	8.63	7.74	11.48	9.47	13.07	11.95
14. 정밀기기								
53. 정밀기기	8.92	5.74	5.23	5.05	9.45	5.83	6.26	6.27
15. 수송장비								
54. 자동차	11.49	7.61	7.63	7.81	13.54	8.50	9.30	10.77
55. 선박	-	0.70	1.88	1.02	-	-4.70	-2.07	-2.73
56. 기타 수송장비	0.74	0.39	0.82	1.10	-7.79	-4.78	-4.34	-3.17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57. 가구	10.51	7.85	4.60	4.02	9.68	8.45	2.65	1.89
58. 기타 제조업제품	12.47	7.75	7.86	7.39	15.69	8.84	9.54	8.90

3. 역관세 문제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1984년 이후 제1, 2차 관세율 인하에 시제를 통해 균등관세율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 후 균등관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적 변화에 따른 조정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고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친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의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²⁹⁾에 의해 다수 완제품이 무세화되었다.

이러한 완제품에 대한 무세화 결과 품목별 혹은 산업별로 가공단계 별 세율 역진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완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호효과가 약화되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역관세³⁰⁾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역관세가 발생되는

29) ITA는 우루과이협상에서 반도체 등 전자제품 386개 품목에 대한 점진적 무세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ITA에 참여한 국가는 호주, 일본, 캐나다, 대만, 노르웨이, EC(15개국),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아이슬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미국 등 29개국이며, 이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 체코공화국, 인도, 이스라엘 등 11개국이 참가하여 총 4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정보기술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2.5%에 달한다. ITA에 의하면 1997년 7월 1일 이후 관련 품목의 관세율을 2000년 1월 1일까지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면서 2000년에는 원칙적으로 완전 무세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예조항으로 인하여 2000년에 193개 품목이 무세화되며 이후 2004년까지 HS 10단위 기준 386개 품목이 완전 무세화되었다. 우리나라 이외에 유예조항을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태국이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2005년까지는 전 품목이 무세화될 예정이다.

30) 역관세 개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최종재와 동 최종재의 원료인 원자재 및 중간재 등의 관세율 사이에 경사관세구조가 아닌 반대의 역의 관계(역차등관세: reverse tariff escalation)가 존재할 때 이를 역관세가 존재한다고 명명한다. 다른 하나는 실효관세율이 음(-)의 보호수준을 나타낼 때를 의미한다. 결국 전자는 후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역차등관세가 나타날 경우 명목관세율보다 실효관세율이 낮아질 것이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실효관세율이 결국 음(-)

모든 품목 혹은 산업에 대해 이를 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 역관세 시정을 위해 세율이 높은 원자재, 중간재 또는 부품의 세율을 인하할 경우 완제품 산업에의 지원효과가 발생하나 그대로 세율을 유지할 경우 원자재, 중간재 또는 부품에 대한 관세상 보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관세 해소로 인하여 새로운 역관세를 야기하는 문제점 등도 고려하여 적절한 해소방안 도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역관세 문제를 실효관세율(혹은 실효보호율) 분석과 함께 언급하고 있지만, 최근 자료를 이용한 경우는 아직 없다. 특히, 새로운 산업연관표가 한국은행에 의해 2003년 10월에 발표됨으로써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역관세 문제를 논의한 보고서는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0년 산업연관표에 근거하여 실효관세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효관세율(effective rate of tariff protection)의 목적은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전체적인 관세율체계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데 있다. 즉, 명목관세율 인상은 상대가격과 수입의 변화를 초래하지만, 원료를 포함한 수입중간재에 대하여 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이로 인한 생산비용의 인상효과로 완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효과는 약화된다. 따라서 실질적 보호의 정도와 자원이동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중간재로 투입되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같이 감안한 실효관세율의 추정이 필요하다.

역관세 문제가 발생하는 품목 혹은 산업을 선별하는 연구는 현재 진행중인 WTO DDA협상과 향후 기본관세율 개편 등에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WTO DDA 협상에서 국별 양허세율일정

의 보호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분석대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실효관세율이 음(-)의 보호수준을 나타내는 협의의 개념에 기준하여 역관세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Country Schedule) 작성에 활용될 수 있으며, WTO DDA 협상 결과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역관세 품목들

역관세 분석에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의 수입액과 관세징수액 자료를 이용하여 실효관세율을 분석하였다³¹⁾. 2000년 이후의 최근 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앞선 실효관세율 분석에서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고, 역관세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과 향후 기본관세율 개편 등에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최근 4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편, 역관세 분석은 HS 10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반영하기가 용이하지만 자료의 한계상 HS 10단위별 실효관세율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실효관세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간투입계수 등이 필요한데 이런 정보는 오로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에 의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가장 세분화된 산업구분³²⁾을 기준으로 HS 10단위의 모든 품목을 산업별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³³⁾.

31) 2000~2003년 실효관세율은 2000년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를 이용하였다. 이는 앞서 각주 26)에서 언급한 가정에 의한다. 또한 집속불변표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2000년 한 개 연도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집속불변표 사용 여부는 분석결과와 상관이 없다.

32) 산업연관표의 산업구분은 통합대분류, 통합중분류, 통합소분류, 기본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통합대분류는 28개 산업으로, 통합중분류는 77개 산업으로, 통합소분류는 168개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가장 세분화된 기본부문은 404개로 산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33) 앞선 실효관세율 분석에서는 77개 산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실효관세율 분석의 목적이 전체적인 변화 추이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세분화된 산업구분을 이용할 경우 이런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관세 분석에서는 최대한 세분화된 산업을 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계속해서 가중평균 및 단순평균 실효관세율 모두에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산업은 분석대상 304개 산업 중 모두 21개 산업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 중에는 낙농, 원목이 있었고, 광산업에서는 무연탄, 철광석, 연 및 아연광석, 기타 비철금속광석이 이에 속했다. 음식료업에서는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가 있었고,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가죽, 목재 및 종이제품의 펄프, 인쇄 출판 및 복제산업의 신문, 출판, 석유 및 석탄산업에서는 나프타 등이 있었다.

화학제품에서는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의 선철, 일반기계 산업에서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에서는 개별소자, 집적회로, 저항기 및 축전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이에 속했다. 이들 부문은 대부분 ITA 협정에 의해 무세화가 적용되면서 중간재 관세율과의 차이로 인해 역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송장비 산업에서는 강철제 선박, 항공기 부문이 포함되었다. 강철제 선박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부문인 반면, 항공기 부문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없는 부문인데 이들 모두에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으로 분석해야만 정책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IV. 실효관세율 변화 추이 119

<표 IV-5> 역관세 부문들(실효관세율 기준)

(단위: %)

통합 대분류	기본부문	단순평균				가중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농림수산물	낙농	-9.24	-9.74	-9.31	-8.33	-8.62	-8.64	-8.59	-7.96
	원목	-6.19	-6.09	-6.19	-6.18	-6.18	-6.20	-6.20	-6.15
광산품	무연탄	-0.40	-0.37	-0.31	-0.25	-0.37	-0.36	-0.33	-0.23
	철광석	-0.13	-0.18	-0.16	-0.62	-0.14	-0.20	-0.18	-0.77
	연 및 아연광석	-1.73	-1.47	-0.61	-1.55	-1.60	-1.47	-0.64	-1.69
	기타 비철금속광석	-0.13	-0.31	-0.24	-0.26	-0.13	-0.19	-0.18	-0.84
음식료품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	-9.97	-11.85	-12.92	-11.73	-11.03	-10.96	-10.70	-9.88
섬유 및 가죽제품	가죽	-5.81	-5.87	-5.97	-5.52	-10.07	-7.95	-11.34	-12.03
목재 및 종이제품	펄프	-2.16	-2.29	-2.23	-3.13	-1.89	-1.93	-2.07	-2.96
인쇄, 출판 및 복제	신문	-6.18	-5.79	-4.63	-3.23	-6.14	-5.77	-4.62	-3.17
	출판	-5.33	-5.15	-4.15	-3.12	-5.13	-4.87	-3.84	-2.82
석유 및 석탄제품	나프타	-27.41	-27.07	-27.10	-21.89	-27.88	-27.96	-27.82	-23.73
화학제품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6.72	-6.67	-5.62	-6.32	-7.87	-7.87	-5.20	-7.55
제1차 금속제품	선철	-4.01	-4.02	-4.26	-3.48	-10.55	-10.70	-10.72	-10.72
일반기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1.89	-1.89	-0.73	-1.25	-3.06	-2.85	-2.15	-2.28
전기 및 전자기기	개별소자	-3.74	-3.93	-3.64	-3.50	-3.30	-2.79	-1.04	-0.22
	집적회로(IC)	-1.50	-1.56	-1.46	-1.39	-1.40	-1.40	-1.40	-1.34
	저항기 및 축전기	-3.74	-3.70	-3.50	-3.45	-3.69	-3.68	-3.60	-3.46
	컴퓨터 및 주변기기	-2.96	-3.84	-3.99	-4.84	-1.59	-2.69	-3.68	-4.62
수송장비	강철제 선박	-4.53	-5.21	-4.16	-3.25	-6.27	-6.33	-5.91	-5.52
	항공기	-4.00	-4.12	-3.70	-3.07	-4.53	-4.57	-4.40	-4.37

나. 역관세 해소 필요성 및 조정

실효관세율의 목적은 전체적인 관세율 체계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데 있다. 즉, 명목 관세율 인상은 상대가격과 수입의 변화를 초래하지만, 원료를 포함한 수입중간재에 대해 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이로 인한 생산비용의 인상효과로 완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효과는 약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역관세 품목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꼭 시정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완전한 균등관세율 체계가 아닌 관세율 8%를 중심으로 한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단일관세율 체계가 아니고 가공단계별 관세율 차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얽혀 보다 복잡해진 산업간 경제구조에서 한 산업의 역관세 시정은 또 다른 산업에 대해 역관세 혹은 현재보다 더 낮은 보호수준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가공단계별 차등관세율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초 원자재에 대한 역관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외적인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농업부문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부문의 원재료를 원료로 이용하는 음식료업의 경우에는 중간재의 관세율이 높게 책정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어렵다면 음식료업의 실질 보호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GATT와 WTO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여러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품목별로 예외적으로 8% 중심세율을 벗어나는 품목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 무관세(0%)가 적용되는 다수 품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간재 산업의 관세율을 무세로 낮추지 않는 한 이들 산업의 역관세 발생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간 연관관계가 보다 복잡해진 경제구조, 정치적 사회적 목적, 그리고 WTO 등의 대외적인 여건으로 모든 역관세 품목에 대해 양(+)

의 보호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이런 이유 등으로 음(-)의 보호수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 역관세 해소 필요성

서술에 앞서 농림수산업과 음식료업에서는 관세율 이외에도 다른 교역장벽과 보조금 등이 있기 때문에 관세율만을 우선시하여 분석한 실효관세율이 보호수준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낙농의 경우 실적관세율³⁴⁾이 0%로 거의 무세로 수입되고 있다. 그런데 최종수요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0.09%로 매우 낮고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 이는 아마도 또 다른 교역장벽에 의한 것으로 이런 보호가 없어진다면 낙농의 역관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는 수입의존도가 39.69%로 음식료품 중에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전체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7%이다.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실적세율은 2003년 기준 단순평균 10.80%, 가중평균 3.74%이지만 중간재의 실적세율은 각각 25.58%와 8.97%로 높기 때문에 역관세 현상이 2000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에서 역관세가 나타나는 것은 중간재로 콩류, 유지작물 등이 많이 사용되면서 이들의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관세율을 정책적으로 낮출 수 없다면 이 부문의 역관세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정책적으로 무세가 적용되는 원목, 펄프 등을 비롯하여 무연탄, 철광석, 동광석, 연 및 아연광석, 기타 비철금속광석은 기초 원료로서 가공단계별 차등관세율 구조에서는 역관세가 불가피하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국내생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관세 시정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 섬유 및 가죽제품에서의 가죽도 원자재에

34) 실적관세율은 관세징수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등도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해당하는 품목이고, 제1차 금속산업의 선철도 기초 원자재이고 특히, 수입액도 많으며 수입의존도가 높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석유 및 석탄산업에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부문은 나프타이다. 나프타는 그 동안 계속해서 역관세 현상을 보인 부문으로 중간재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즉, 원유의 관세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4년에는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등을 통해 낮은 세율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문의 실효관세율도 아마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이들 부문의 역관세 해결은 원유 관세율에 의해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원유 관세율 수준은 여타 부문의 역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관세수입, 에너지 체계 등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여겨진다.

신문, 출판 등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 무세화가 이루어진 분야로 중간재의 관세율이 무세가 아닌 한 역관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신문은 수입의존도가 0.36%로 매우 낮고 국내 생산과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출판의 실적관세율은 0%인 데 비해 중간재 관세율은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각각 1.36%와 1.19%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간재 관세율이 1% 수준으로 이를 시정함으로써 역관세를 해소시키기에는 그 수준이 낮아 다른 부문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출판에는 일반서적, 교과서 등 단행본 서적류, 잡지류의 정기간행물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서적이 가지는 언어적 특징의 비교역재 성격이 많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ITA협정으로 무세화가 이루어지면서 역관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문 들로는 화학제품의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일반기계 산업의 반도체 제조용 기계, 그리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개별소자, 집적회로, 저항기 및 축전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있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무역수지 측면을 보면, 개별소자, 저항기 및 축전기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집적회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집적회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수출액이 각각 약 27조원과 약 10조원으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11.5%와 4.3%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에서는 집적회로는 16.50%,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31.45%로 집적회로가 수출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수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적회로의 투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80.30%로 투자재 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중간재 및 투자재의 수입의존도가 각각 45.50%와 51.66%로 나타나 절반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두 부문이 우리나라 부가가치 창출과 총산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부문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산화가 어려운 중간재 및 투자재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낮춤으로써 이들의 역관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높은 수입의존도를 인정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재에 대한 보호수준을 유지해서 국산화를 유도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중간재로 사용되는 것 중 국산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중간재 및 투자재에 대해서는 이를 낮출 필요가 있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조립가공업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선별적으로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적인 맥락에서 집적회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의 역관세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수송장비 산업에서 강철제 선박, 항공기 등에서 실효관세율이 음(-)의 보호수준을 보이고 있다. 강철제 선박은 무역특화지수가 61.02%로 수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강철제 선박에서는 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강철제 선박은 투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6.5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강철제 선박이 음(-)의 보호수준을 보이면서도 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는 반면 항공기는 무역특화지수가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항공기의 경우에는 수입의존도도 77.71%로 높은 편이다. 항공기의 가중평균 실적세율은 0.10%로 매우 낮다. 이에 비해 중간재 관세율은 1.75%로 나타나기 때문에 음(-)의 실효관세율이 나타나고 있다. 강철제 선박의 가중평균 실적세율도 0.19%로 매우 낮다. 대부분 선박이 무세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송장비 산업에서는 최종재보다는 중간재에 대한 보호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으로 여겨진다. 경쟁력이 낮은 항공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간재 산업의 보호수준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강철제 선박에 대해서는 투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2) 역관세 조정

앞서 살펴본 산업들 중에서 기초 원자재 등 역관세 조정이 중요하지 않은 산업을 제외하고 몇몇 중요한 산업들에 대해 역관세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는 수입의존도가 39.69%로 음식료품 중에서 높은 편이다.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실적세율은 2003년 기준 단순 평균 10.80%, 가중평균 3.74%이지만 중간재의 실적세율은 각각 25.58%와 8.97%로 높기 때문에 역관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에서 역관세가 나타나는 것은 콩류, 유지작물 등 관세율이 매우 높은 중간재들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콩류와 유지작물 중 대두, 녹두, 참깨 등은 수입량 조절로 시장접근물량 이외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 예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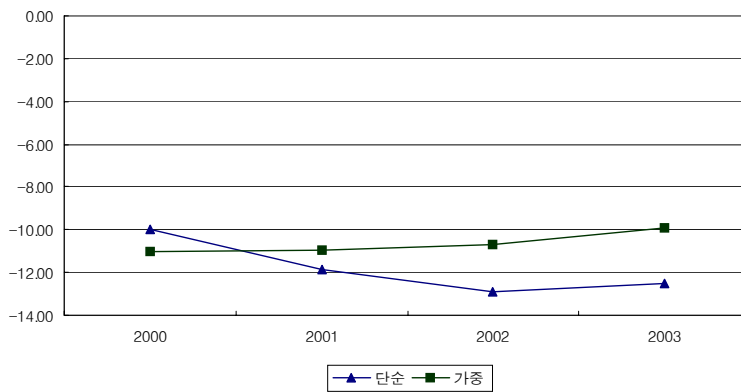
당관세 등 모든 탄력관세가 적용이 된 실적세율을 살펴보면 콩류는 지난 2000년 이후 단순평균 80~100%의 세율을 상회하고 있다.

분석결과 콩류와 유지작물에 대해 지금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할 경우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에서도 역관세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적으로 콩류의 관세율을 낮출 경우, 두부, 장류 등에서도 실효관세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부문에서 중간재 관세율이 하락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접근물량을 통해 수입물량이 조절되는 대두, 참깨 등의 관세율 조절이 필요한데 다만,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역관세를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농산물 보호에 의한 농산물 고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림 IV-9]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실효관세율 추이

(단위: %)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콩과 유지작물의 경우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들 관세율을 조정하여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역관세가 해소 가능하였지만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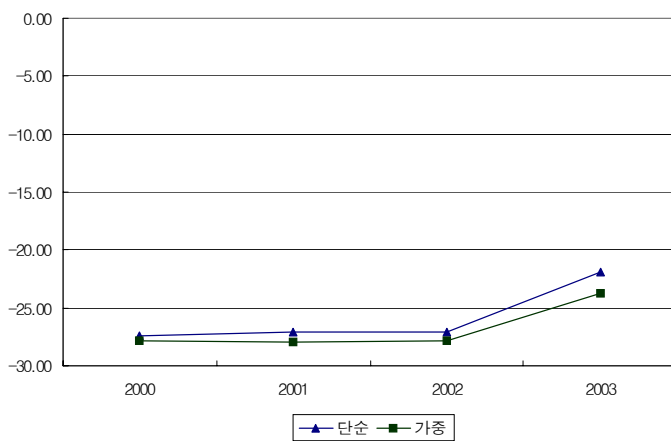
업에서는 서로 연관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하게 산업 연관표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요인들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 나프타

원유의 관세를 무세로 적용했을 때 그동안 지속적으로 음(-)의 실효관세율을 보인 나프타도 단순평균, 가중평균 모두 양(+)의 실효관세율로 전환되었다. 나프타의 실효관세율이 2003년 약간 상승한 것도 2003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된 원유 관세의 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 원유의 무세는 중유, 제트유 등 직접적으로 원유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그림 IV-10] 나프타의 실효관세율 추이

(단위: %)



결과적으로 나프타의 음(-)의 보호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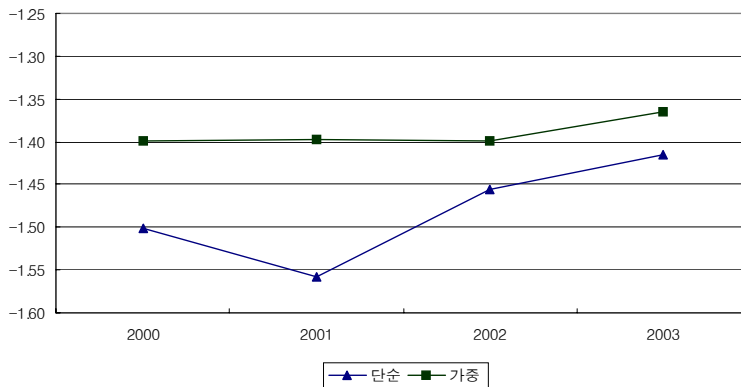
관세의 무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한 것으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원유 관세의 무세화는 단순히 나프타의 역관세 해소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현재 원유에는 관세 이외에 수입부담금 등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실효관세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³⁵⁾.

다) 집적회로, 개별소자 등

집적회로 부문은 2000년 산업연관표 기준 31조 7천억원의 산출액과 11조 9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총산출액 중 2.3%, 부가가치액 중 약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집적회로의 실효관세율은 4년여 동안 유사한 수준의 역관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11] 집적회로(IC)의 실효관세율 추이

(단위: %)



35) 즉, 원유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효과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유 관세수준만을 이용한 나프타의 음(-)의 보호수준은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수출입 규모를 보아도 2000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집적회로의 수출액은 약 27조원으로 전체 수출의 11.48%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집적회로의 수입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전체 수입 대비 8.85%를 차지하여 예외적인 원유를 제외하고 제일 수입액이 큰 산업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수출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약 7조 7천억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집적회로의 무역특화지수는 16.50%로 집적회로가 수출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수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적회로의 투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80.30%로 투자재 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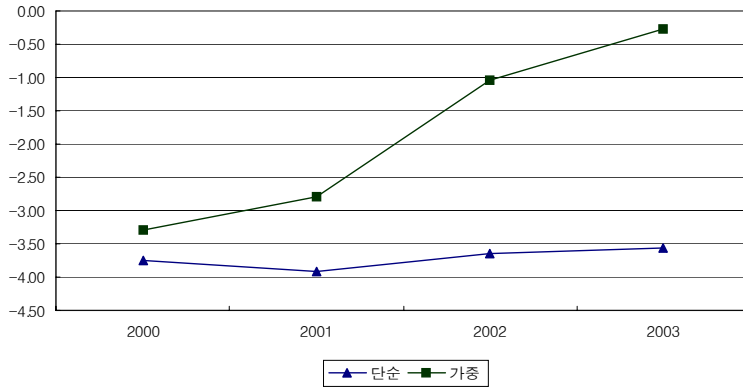
집적회로의 역관세를 해소하기 위해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는 개별소자, 기타화학제품 등 8개 부문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집적회로의 실효관세율은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각각 -1.39%와 -1.34%에서 -0.65%와 -0.64%로 약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집적회로의 역관세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집적회로의 투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80.30%로 투자재 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감안하여 국내 생산이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 관세를 무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집적회로는 많은 물량이 수출되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역관세 현상은 본고에서 분석한 것보다 더 작을 수 있다. 다만, 관세환급제도에 의한 행정비용 발생과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와의 문제점 등은 있을 수 있다.

개별소자의 경우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난다. 이는 개별소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간재 중 ITA 협정에 의해 추가적으로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단순평균 실효관세율에서는 계속해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지만 수입액 비중을 감안한 가중평균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림 IV-12] 개별소자의 실효관세율 추이

(단위: %)



개별소자의 역관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적회로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한 결과 거의 역관세가 해소되었고, 기타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적용할 경우 개별소자의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적회로의 일부 품목 등 2004년까지 무관세화가 추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별소자에 대해서는 향후 실효관세율의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향후 분석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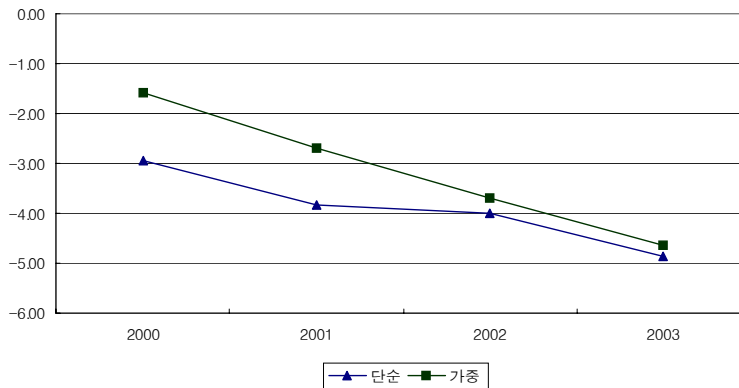
이 밖에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반도체 제조용 기계, 그리고 저항기 및 축전기는 ITA 협정으로 인해 최종재의 관세율이 무세로 전환되어 그동안 계속해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산업들이다. 분석결과 이들 부문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부문의 무관세를 통해 실효관세율이 개선될 수 있으며 무관세가 이루어지는 많은 부문에서 다시 새롭게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역관세를 해소할 적절한 방안은 찾기 어렵다. 다만, 일부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정에 따른 부분적인 실효관세율 개선만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집적회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집적회로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무역특화지수는 31.45%로 집적회로보다 높았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중간재 및 투자재의 수입의존도가 각각 45.50%와 51.66%로 나타나 절반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실효관세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13]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실효관세율 추이

(단위: %)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역관세를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부문의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는 집적회로, 전자관, 평면 디지털 표시장치, 기타 전자부품, 인쇄회로기판, 개별소자, 산업용 플라스틱,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등 8개 부문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 결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실효관세율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역관세 현상은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즉, 실효관세율이 하락하는 현재 추세에서 이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중간재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야 하며 이럴 경우 이들 중간재에서 모두 역관세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경우 그 중간재로 사용되는 부문이 여러 산업에 걸쳐 폭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러므로 전체적인 관세율 수준 이하 이외에는 뚜렷하게 역관세 해소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세분화된 산업별로는 일부 중간재 관세율 조정을 통해 부분적인 실효관세율 개선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³⁶⁾. 또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제도적 개선도 보호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마) 강철제 선박

강철제 선박은 무역특화지수가 61.02%로 수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강철제 선박에서는 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강철제 선박의 가중평균 실적세율은 0.19%로 매우 낮는데 이는 대부분 선박이 무세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즉, 강철제 선박이 음(-)의 보호수준을 보이면서도 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강철제 선박의 역관세를 해소하기 위해 강철제 선박의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는 내연기관 및 터빈, 선박수리 및 부품품, 열간압연강재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강철제 선박의 음의 실효관세율의 절대값 크기는 감소하였지만 역관세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강철제 선박에서 음(-)의 실효관세율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 주요 중간재 이외의 비교역재를 포함한 여러 요소들로부터 작용

36)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산업을 더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산업연관표상에 나타난 가장 세분화된 산업구분으로 더 세분화된 산업별 투입계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관세율 분석에서는 한계로 남는다.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일부 선박용 엔진, 선박용 부품들의 관세율 조정을 통해서도 강철제 선박의 역관세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강철제 선박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부품의 관세율을 낮출 경우 해당 산업의 실효관세율 하락으로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현재 선박제조시설은 보세구역이고 대부분의 선박이 수출됨으로써 관세유예와 사후 환급에 의해 사실상 완성품 업체에겐 관세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에서 우월한 특정 국내부품을 제외하고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중간재의 관세율을 낮추어 보호수준을 낮추는 것은 역관세 해소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한편, 강철제 선박과 기타 선박은 무역특화지수가 높은 산업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환급제도를 잘 활용하거나 혹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수출품에 대한 역관세가 발생하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정책적 시사점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한 산업의 역관세 조정은 분명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최종재의 역관세를 조정하기 위해 중간재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역관세를 해소하기 위해 대두, 참깨 등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또한 나프타의 역관세를 해소하기 위해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등이 한 예이다. 또한 이러한 역관세 조정을 통한 최종재의 보호수준 증가가 더 나은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등 제조업에서는 개별 산업간의 연관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산업

의 역관세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간재 산업의 관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중간재에 대해 보호를 할 것이고 어느 중간재를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별 산업별 연구도 이와 함께 수행되어야 하며, 개별 산업별로 의견 청취도 중요하다.

역관세 해소를 위해 개별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중심관세율 체계와 상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경제가 복잡해질수록 정책당국에서 개별 산업별로 더 나아가 개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개별적으로 최적의 관세율을 찾아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역관세 분석에서 보듯이 산업간 연관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최적 관세율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무관세만이 최적의 관세율 수준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중간재 관세율에 주목하려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와 최종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DDA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여부가 판가름된다. 이런 시점에서 서둘러 역관세를 시정할 필요성은 매우 작다고 여겨진다. 만약 지금 역관세 시정을 위해 기본관세율 체계를 조정할 경우 향후 DDA 협상결과에 의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다시 한 번 개편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 없이 산업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저해하여 또 다른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협상 이후 전체적인 기본관세율 체계의 개편을 시도할 때 역관세 품목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하며, 현재 산업별로 역관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등의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탄력관세제도의 취지가 바

로 전체적인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에 앞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역관세 문제 해소는 새로운 부문에 대해 역관세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한 역관세 해소를 위해 중간재 부문에 대해 관세율을 낮출 경우 해당 중간재 산업의 보호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제품 산업과 중간재 산업 중 어느 산업을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 정책적 판단이 병행해야 하며, 이와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세율 불균형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해야 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4. 관세율과 산업구조

정부에서 관세율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관세율 구조를 통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단일세율체계 대신 차등관세율 구조를 유지한다면 정부가 이런 목적을 더욱 뚜렷하게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전에는 산업별 차등관세율 체계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계획에 맞추어 산업구조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1984년 이후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제 1, 2차 관세인하예시제에 의해 그 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는 균등관세율 구조라기보다는 중심관세율 구조로 절반 정도의 품목에 중심세율인 8%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완전히 산업중립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 ITA 협정 등 WTO에 의해 주도되는 다자간 관세인하협정에 의해서도 관세율이 차등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구한 관세율 정책이 우리나라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앞서 살펴본 수입의존도와 무역특화지수에 대해 그 동안의 관세율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³⁷⁾. 즉, 수입의존도와 무역특화지수가 관세율 정책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정부가 향후 어떤 정책 목표를 관세율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할 때 혹은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를 개편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효관세율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나타날 경우 명목관세율은 물론이고 실효관세율 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대안이 될 것이며, 향후 관세율 구조를 논의할 때도 실효관세율 분석이 기초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 분석모형 설정

무역특화지수와 관세율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간단한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무역특화지수는 1990년, 1995년, 그리고 2000년에 각각 58개 품목에 대한 자료이며 관세율은 크게 명목관세율(실적관세율) 혹은 실효관세율을 설명변수로 하였다³⁸⁾. 따라서 다음의 방정식을 기본으로 회귀분석을 시도

37) 앞서 무역특화지수와 수입의존도 이외에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산출액, 부가가치액, 수출입 규모 등의 추이변화를 살펴 보았다. 무역특화지수와 수입의존도는 수입을 통해 관세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산출액, 부가가치액 등은 관세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정책과 경제변수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관세정책의 효과에 한정하여 무역특화지수와 수입의존도 변화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38) 무역특화지수와 수입의존도의 회귀방정식의 설명변수로는 각각 실효관세율과 명목관세율이 채택되었다. 실효관세율과 명목관세율을 모두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을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로 추정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각각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후 보다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채택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그 결과 무역특화지수의 설명변수로는 실효관세율

하였다.

$$TSI(t) = constant + \alpha \cdot TRF(t) + \varepsilon(t) \quad (\text{식 1})$$

단, $TSI(t)$ 는 t 년도 무역특화지수이며 $TRF(t)$ 는 관세율(명목·실효)이며 잔차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또한 가중치를 구하는 방식에 따라 단순(명목·실효)관세율과 가중(명목·실효)관세율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관세부과가 수입품목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쳐 무역특화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동학적으로(dynamic) 나타나는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설명변수로 관세율의 시차변수(lagged variable)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회귀방정식은 다음의 (식 2)로 변형된다.

$$TSI(t) = constant + \beta \cdot TRF(t-1) + \zeta(t) \quad (\text{식 2})$$

또한 무역특화지수가 자기상관성을 가지는 것을 가정하여 무역특화지수의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였다.

$$TSI(t) = constant + \gamma_1 \cdot TSI(t-1) + \gamma_2 \cdot TRF(t-1) + \mu(t) \quad (\text{식 3})$$

수입의존도(TDEP)와 관세율의 회귀방정식도 위의 논리대로 구성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수입의존도의 설명변수로는 명목관세율이 적절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점을 지적하여 준 익명의 평가자에게 감사를 전한다.

나. 관세율과 무역특화지수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관세율 정책이 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자. 무역특화지수는 전체 수출입 합계에서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순수출의 비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특화지수는 수입대항력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해석되기도 한다. 무역특화지수의 이런 특징으로 표면상 나타난 명목관세율도 수입량을 통해 무역특화지수에 영향을 주겠지만, 실효관세율이 무역특화지수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명목관세율이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공단계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부과되는 상황에서 실효관세율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다른 산업들의 관세율 구조까지 고려되었기 때문에 실효관세율이 무역특화지수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그 효과는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상승으로 수입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관세율과 무역특화지수는 정(+)¹⁾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 예상대로 실효관세율이 무역특화지수에 양(+)²⁾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4]는 무역특화지수와 실효관세율의 분포를 나타낸다. 1990년부터 5년간 2000년까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미약하게나마 보여준다. 하지만 회귀분석의 결과는 보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다음의 <표 IV-6>은 위에서 구축한 회귀방정식에 의해 실증 분석한 결과이다. 추정방법은 OLS이며 설명변수의 97%를 벗어나는 outliers를 제거하고 회귀분석하였다. 사용된 변수의 수는 53~55개이다.

먼저 (식 1)에 기초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자. <표 IV-6>에서 (1)과 (2)식에서 보듯이 1990년도의 경우 비교적 높은 유의도를 가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단순평균 실효관세율과 가중평균 실효관세율 모두 1% 유의수준에서 무역특화지수에 대한 양(+)³⁾의 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1995년도의 경우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은 양수의 추정계수

(1% 유의수준)를 얻어 만족스러운 값을 보였지만 단순평균 실효관세율은 추정계수가 양(+)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3)과(4). 그리고 2000년의 경우 가중평균 실효관세율만 5%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보였다(11)과(12).

다음 (식 2)에 의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표 IV-6>의 (5)와 (6)을 보면 1995년도의 무역특화지수의 경우 1990년도의 실효관세율이 잘 설명해준다. 이는 앞서 서술했듯이 관세부과효과가 5년이 경과한 뒤에 무역특화지수에 나타나는 동학적 효과(dynamic effect)를 관세율의 시차변수로 통해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도의 무역특화지수도 단순평균 실효관세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을 때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을 <표 IV-6>의 (14)에서 알 수 있다.

이제 무역특화지수를 설명하는 변수로 무역특화지수의 시차변수와 관세율을 설명변수로 하는 (식 3)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1995년의 경우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의 시차변수와 무역특화지수의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한 (8)의 결과가 가장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도의 경우는 반대로 무역특화지수의 시차변수와 단순평균 실효관세율이 변수로 들어간 (15)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림 IV-14] 무역특화지수(종축)와 실효관세율(횡축)

<표 IV-6> 무역특화지수와 실효관세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상수항	단순 실효 관세율 (t)	가중 실효 관세율 (t)	단순 실효 관세율 (t-1)	가중 실효 관세율 (t-1)	무역 특화 지수 (t-1)	R ²	
무역특화 지수 (1990)	(1)	-46.551*** (-3.75)	2.829*** (3.13)				0.1638	
	(2)	-42.556*** (-4.03)		2.909*** (3.57)			0.2001	
무역특화 지수 (1995)	(3)	-25.517*** (-2.73)	0.673 (0.89)				0.0146	
	(4)	-41.087*** (-4.10)		3.178*** (2.84)			0.1317	
	(5)	-41.045*** (-3.24)			1.829** (1.98)		0.0728	
	(6)	-47.055*** (-4.58)				2.714*** (3.42)	0.1867	
	(7)	-11.214 (-1.65)			0.569 (1.06)		0.853*** (13.71)	0.838
	(8)	-13.746*** (-2.84)				0.493* (1.87)	0.812*** (12.44)	0.7732
	(9)	-8.221** (-2.32)	0.104 (1.13)				0.853*** (13.88)	0.7780
	(10)	-11.223** (-2.32)		0.554 (1.32)			0.837*** (13.14)	0.7846
무역특화 지수 (2000)	(11)	-22.780** (-2.23)	1.899 (1.59)				0.0473	
	(12)	-27.671*** (-2.93)		2.215** (2.04)			0.0725	
	(13)	-18.605 (-1.67)			0.833 (0.64)			0.0078
	(14)	-28.106** (-2.68)				2.096* (1.79)		0.0570
	(15)	2.8115 (0.98)			0.156** (2.18)		0.934*** (18.89)	0.8678
	(16)	11.807** (2.63)				-0.990** (-2.11)	0.971*** (18.16)	0.8716
	(17)	2.116 (0.72)	0.293** (2.28)				0.923** (18.40)	0.8656
	(18)	4.973 (1.19)		-0.061 (-0.14)			0.938*** (17.04)	0.8592

주: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의 유의도를 나타냄.

다. 관세율과 수입의존도 관계

한 나라의 관세율 수준은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명목관세율(실적관세율)이 실효관세율보다 수입의존도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수입이 이루어질 때에는 대외적으로 표명된 관세율에 의해 수입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실효관세율은 다른 산업과의 구조적 관계와 관세율이 고려된 것으로 수입의존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명목관세율에 비해 떨어질 것이다³⁹⁾.

분석결과 수입의존도에 명목관세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의존도와 실효관세율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수입의존도와 명목관세율 사이에서는 단순평균, 가중평균 명목관세율 모두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그림에서도 보듯이 수입의존도와 명목관세율의 분포는 예측한 대로 역(-)의 상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OLS에 의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해연도 명목관세율을 설명변수로 했을 때 단순평균, 가중평균 명목관세율 모두 대부분의 경우 음의 계수와 5% 미만의 유의수준을 보이는 우수한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무역특화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목관세율의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했을 때에도 모두 높은 유의수준을 가지며 예측한 부호를 나타내는 추정결과를 보여주었다.

39) 무역특화지수의 회귀식과는 달리 수입의존도의 회귀식에서는 종속변수의 시차변수(lagged variable)가 설명변수로 포함된 분석결과가 없는데 이는 시차변수를 포함하여 회귀하였을 경우 시차변수의 추정계수 t-값이 현저하게 낮아 설명력이 떨어지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IV-15] 수입의존도(종축)와 명목관세율(횡축)

<표 IV-7> 수입의존도와 명목관세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상수항	단순 명목 관세율 (t)	가중 명목 관세율 (t)	단순 명목 관세율 (t-1)	가중 명목 관세율 (t-1)	R ²
수입의존도 (1990)	(1)	41.980*** (5.99)	-1.738** (-2.82)				0.1326
	(2)	32.874*** (6.06)		-1.054* (-1.97)			0.0694
수입의존도 (1995)	(3)	34.598*** (7.39)	-1.062** (-2.44)				0.0958
	(4)	34.718*** (7.65)		-1.310** (-2.58)			0.1065
	(5)	45.536*** (6.49)			-1.880*** (-3.05)		0.1517
	(6)	35.208*** (6.43)				-1.083* (-2.00)	0.0717
수입의존도 (2000)	(7)	30.508*** (8.43)	-0.295* (-1.75)				0.0516
	(8)	36.401*** (7.43)		-1.333** (-2.37)			0.0912
	(9)	37.677*** (7.50)			-1.208** (-2.59)		0.1066
	(10)	36.719*** (7.45)				-1.335** (-2.42)	0.0950

주: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의 유의도를 나타냄.

라. 정책적 시사점

관세율과 수입의존도 그리고 무역특화지수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관세율 정책이 분명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입의존도의 경우에는 명목관세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입의존도를 정책적으로 조정할 경우 명목관세율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실효관세율이 무역특화지수에 양(+)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정책적으로 관세율 구조를 조정할 때 실효관세율 수준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고, 향후에도 관세율 구조를 개편할 때 실효관세율 구조를 살펴볼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실효관세율에서 음(-)의 보호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역관세 품목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집적회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들에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경우 무역특화지수가 더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결과를 통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분화된 산업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분석으로 개별 산업에 대한 해석은 향후 산업별 분석에 의해 다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이런 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효관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효관세율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는 최종재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이는 WTO 체제에서 특히 ITA 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추진된 최종재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이므로 이보다는 중간재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율 인하와 함께 선별 작업을 통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에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중심관세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라면 중간재 세율을 원자재에 가깝게 낮추고 이로 인해 소비재의 수입 의존도가 증가하여 국내대체산업이 피해를 입을지 모르지만 결국 보다 부가가치 창출이 큰 자원으로의 재분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적의 자원재분배를 유도하는 것이 관세율 정책이 가지는 큰 역할 중의 하나이다. 한편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중심관세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여 국

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런 관세율 구조를 통해 자원재배분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중간재 선별 역시 향후 개별 산업별 세부 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분야로 여겨진다. 특히,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핵심 부품 및 소재 산업 연구와 함께 업체별 실태조사도 함께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를 HSK와 연계시키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관세율 변화라는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는 산업구조와 실효관세율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이용하여 시계열 자료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관세율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관세율과 무역특화지수 및 수입의존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세율 정책이 분명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기존 연구에서도 실효관세율, 무역특화지수 및 수입의존도 등을 추정하고 산출하는 연구는 있었지만 이들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상호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된 시계열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도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자료가 축적되면 더 기간을 늘림으로써 보다 풍성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실증분석 결과 실효관세율은 무역특화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명목관세율은 수입의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수입의존도를 정책적으로 조정할 경우 명목관세율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현재까지도 정책적으로 관세율 구조를 조정할 때 실효관세율 수준을 고려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향후에도 관세율 구조를 개편할 때 실효관세율 구조를 살펴볼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실효관세율 수준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곧 정책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실효관세율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생

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최종재에 대한 관세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는 WTO 체제에서, 특히 ITA 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추진된 최종재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중간재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중간재의 관세율을 낮출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재에 대한 선별 작업을 통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에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중심관세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정책시사점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향후 관세율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며, 본고의 분석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입증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중간재 선별 연구는 향후 개별 산업별 세부 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분야로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넘는 부분이다. 특히,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핵심 부품 및 소재 산업 연구와 함께 업체별 실태 조사도 함께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를 HSK와 연계시키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학·연 협동을 통한 방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별적인 중간재 관세율 조정을 통해 역관세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역관세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한 산업의 역관세 조정은 새로운 부문에 대해 역관세를 발생시킬 수 있고, 역관세 해소를 위해 중간재 부문에 대해 관세율을 낮출 경우 해당 중간재 산업의 보호수준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제품 산업과 중간재 산업 중 어느 산업을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 정책적 판단과 중간재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세율 불균형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해야 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분화된 산업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분석으로 개별 산업에 대한 해석은 향후 산업별 분석에 의해 다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이런 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효관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한 역관세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경우 콩류, 유지작물 등의 관세율을 낮출 경우 역관세 현상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콩류와 유지작물 등 대두, 녹두, 참깨 등은 시장접근물량 관리 품목으로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역관세를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산물 고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사례가 된다.

또한 나프타 역관세 해소를 위해서는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필요한데, 원유의 관세율 수준은 나프타에서 나타나는 역관세 해소보다는 더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등 제조업에서는 개별 산업간의 연관 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산업의 역관세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중간재 산업의 관세율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중간재에 대해 보호를 할 것이고 어느 중간재를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특히 컴퓨터와 주변기기 산업처럼 해당 산업의 중간재가 여러 산업에 걸쳐 폭 넓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종재보다는 보다 많은 중간재 산업의 보호가 더 나은 정책대안으로 여겨진다. 다만, 집적회로 산업처럼 컴퓨터와 주변기기 산업도 무역특화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적극 활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최종재 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선박의 역관세 문제는 역관세 관점이 아닌 다

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선박제조시설은 보세구역이고 대부분의 선박이 수출됨으로써 관세유예와 사후 환급에 의해 사실상 완성품 업체에겐 관세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에서 우월한 특정 국내부품을 제외하고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중간재의 관세율을 낮추어 보호수준을 낮추는 것은 선박의 역관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해당 중간재 산업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역관세 해소 혹은 실효관세율 개선을 위해 개별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중간재에 적절한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중심관세율 체계와 상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본적으로는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가 복잡해질수록 정책당국에서 개별 산업별로 더 나아가 개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개별적으로 최적의 관세율을 찾아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역관세 분석에서 보듯이 산업간 연관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최적 관세율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중간재 관세율에 주목하려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간재 관세율에 대해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와 최종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심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실효관세율 개선과 역관세 해소 등 관세율 정책이 추구하는 최적의 자원배분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세율 정책의 시행 시기는 현재 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DDA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그 이후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지금 역관세 시정을 위해 기본관세율 체계를 조정할 경우 향후 DDA 협상결과에 의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다시 한 번 개편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 없이 산업구조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주체

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저해하여 또 다른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협상 이후 전체적인 기본관세율 체계의 개편을 시도할 때 역관세 품목들 등 실효관세율 수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하며, 다만, 현재 산업별로 역관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등의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탄력관세제도의 취지가 바로 전체적인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에 앞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추가적으로 산업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취약산업의 보호보다는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에 더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8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향해 관세율 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이런 관세율 정책은 두 차례에 걸친 관세인하예시제를 통해 산업 중심적에서 산업 중립적인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섬유산업 등에 대한 관세율을 중심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 관세율 인하 및 무세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섬유 및 가죽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업종의 하락과 전기 및 전자기기 등 조립가공 업종의 상승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비재 업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980년의 12.87%에서 2000년에는 6.96%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조립가공 업종은 3.25%에서 11.97%로 상승하였다. 한편, 수출에서도 조립가공 제품의 수출비중이 1980년의 15.4%에서 2000년 48.5%로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재 제품의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 39.7%에서 2000년에 13.3%로 감소하여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관세율 정책과 연관시켜 분석하면, 1997년에 추진한 섬유산업

등에 대한 관세율 인상정책은 이들 산업을 수입 측면에서는 보호하였지만,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기보다는 이들 산업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자원이동을 지연시켰을 뿐인 것으로 평가된다.

취약산업에 대한 관세율 정책상의 지원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관세율 정책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일명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으로 정해진 관세율 수준에서 어느 한 산업을 지원함(관세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자원을 특정 산업에 묶어 두거나 혹은 해당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는 자원이 덜 배분되게 된다. 따라서 취약산업을 보호하여 이들 산업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도록 관세율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지원할지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사양산업 보호는 급격한 자유화의 폐해를 줄이고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쉽기 때문에 편리한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한정된 자원과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에서는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사양산업에 대한 탄력관세, 반덤핑관세 혹은 관세환급 등의 정책 수단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것은 아니며 이런 정책수단은 필수적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고부가가치 핵심 중간재 산업에 대한 선별적 육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 특히, 기본 관세율 정책이 지향할 바에 대한 논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들과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정책적 판단과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개별 국가별로 FTA가 체결되고 FTA 특성상 모든 품목을 일시에 무세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철폐 예외품목, 관세유예기간 설정 품목, 그리고 즉시 관세철폐 품목 등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해당 국가별로 차등관세를 적용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런 품목을 선별하여 관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당 국가별로 품목별 산업별 차등관세를 어떻

게 적용할지 즉,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예외를 적용하고 관세유예기간 설정 품목으로 정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특히, 중간재 산업이 발달한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염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앞서도 중간재에 대한 선별적 연구를 강조하였지만, 개별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FTA뿐만 아니라 FTA 대상국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 장기적으로 어떤 품목과 산업에 대해 관세 보호가 필요한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런 연구 결과가 향후 기본관세율 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석·홍성덕, 『명목 및 실효보호율구조의 장기적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서 36, 1980.
- 김광석·L.E. 웨스트팔, 『한국의 외환·무역정책』,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서 9, 1976.
- 김진수·안종석,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4.
- 남종현, 『한국의 산업유인정책과 산업별 보호구조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사 보고서, 1981.
- 박상대, 「한국 관세율체계의 적정성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 유정호·홍성훈·이재호,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 - 1990년 명목 및 실효보호율 추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3-02, 1993.
- 유정호, 『한·대·일의 수입의존도 비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5-02, 1995.
- 이명헌 외, 『관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분석: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01-06, 2001.
- 이명헌 외, 『뉴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관세율 변화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 00-10, 2000.
- 장근호, 『열린 시대의 관세율정책: 수입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 관세율체계의 평가』, 연구보고서 97-17,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장근호·이명헌, 『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세율 정책의 현황과

-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99-02,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장근호·박상태, 『소비 관련 제세의 보호효과:이론과 실증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2002.
- 장근호, 『자원배분과 관세율정책에 대한 소고』, 『관세무역연구』, 제3권, 2004, pp. 193~213.
- 재무부 관세국, 『관세율 개편 백서』, 1989.
- 재무부 관세국, 『관세율정책운용실적 및 방향』, 1991.
- 정재완 외, 『관세법 강의』, 삼일인포마인, 2004.
- 정재호, 『WTO DDA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재정포럼』, 제82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a.
- _____,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제84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b.
- _____, 『WTO 제5차 각료회의와 DDA 협상의 진행』, 『재정포럼』, 제88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c.
- 최낙균 외, 『UR이후 저관세율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방향』, 산업연구원, 1993.
- 홍성덕, 『명목 및 실효보호율의 구조변화(1975~1990)』,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자료 92-01, 1992.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지원시책의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82-09, 1982.
- 한국산업은행, 『국내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실태분석』, 1994.
- 한국은행, 『1990년 산업연관표』, 1993.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 Balassa, Bela., "Tariff Protection in Industrial Countries: An Evalu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3, No. 6, 1965, pp. 675~594.
- Corden, W.M., "Import restrictions and tariffs: A new look at

- Australian policy," *Economic Record* 34, December 1958, pp. 331~346.
- _____, "The Structure of a Tariff System and the Effective Protective Rat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4, 1966, pp. 221~237.
- _____, "Trade Policy and Economic Welfare," Clarendon Press, Oxford. 1974.
- WTO, "Draft Elements of Modalities for Negotiations on Non-agricultural Products," TN/MA/W/35/Rev. 1, 2003.
- _____, <http://www.wto.org>.

<국문요약>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정재호 · 류덕현

본고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관세정책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실효관세율 변화에 대한 일관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관세율과 산업구조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관세율과 무역특화지수 및 수입의존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관세율 정책이 분명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실효관세율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중간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장잠재력이 없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경우에 원자재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중심관세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별적인 중간재 관세율 조정을 통해 역관세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산업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취약산업의 보호보다는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에 더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고부가가치 핵심 중간재 산업에 대한 선별적 육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Tariff and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Jaeho Cheung, Deockhyun Ryu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tariff rate policy on the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To this end, we construct a time series of the effective rate of tariff protection and perform an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industrial structure with this newly constructed tariff rat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ive rate of tariff protection have influential effects on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and the degree of dependence on import, as desired. Thus, it is advised that we raise the effective rate of tariff protection on the major industries. For example, we can have two-part tariff rates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industry: zero rates for lower value-added products like raw materials and uniform tariff rates for higher value-added parts and materials. We can also adjust selectively a uniform tariff rate to solve a lower tariff rate phenomenon in raw and materials than in finished goods.

So far as industrial structure is concerned, the emphasis on tariff policy should be placed on fostering the domestic growth industries like a higher value-added intermediate goods rather than protecting weak industries.

<著者略歴>

鄭 在 皓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Wisconsin-Madison대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柳 德 鉉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Rice대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政策報告書 04-03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2004년 12월 24일 인쇄
2004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정재호·류덕현
발행인 최용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1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팩시밀리 : 2186-2179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상 일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4

ISBN 89-8191-288-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